



---

#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실무 매뉴얼

---

2011. 0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기업집단현황공시 보완 내역

- [공시 전반]
  - 공란이 있을 경우 삭제 가능
  - 편입·제외일에 따른 공시 대상 여부 예시 추가
  - 12월말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그 결산일에 맞춰 공시
  - 대표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 는 양식 1. 회사의 개요를 제외하고 삭제
- [양식 3 손익현황] IFRS 도입에 따른 영향 반영
- [양식 6. 임원현황] 기재 요령을 명확화 및 퇴직임원 기재란 추가
- [양식 7.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양식에서 ‘사외이사 총수’ 기재요령 수정
- [양식 8, 9 주식소유현황] 양식 통합
- [양식 10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출자금 기재 요령 수정, 기타 공시 삭제
- [양식 13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현황] 감사 관련 설명 추가, 기타 공시 삭제
- [양식 16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공시 방법 변경
- [양식 17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임대료 수징 관련 설명 추가, 기타 공시 삭제
- [양식 21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공시 내역을 명확화 및 FAQ를 매뉴얼 본문으로 이동

# 목 차

<b>I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b> .....	2
<b>1. 도입배경</b> .....	3
<b>2. 제도의 개요</b> .....	5
<b>3. 법적근거 및 필요성</b> .....	7
<b>4. 주요용어 설명</b> .....	8
<b>5. 적용대상 회사</b> .....	10
<b>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b> .....	12
①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의 개요 .....	13
②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현황 .....	15
③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	17
④ 해외계열회사 현황 .....	19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	21
⑥ 임원명, 직위 등 임원현황 .....	23
⑦ 이사회, 위원회 등 운영현황 .....	25
⑧⑨ 소유지분현황 .....	29
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	31
⑪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차입현황 .....	33
⑫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현황 .....	36
⑬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현황 .....	38
⑭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 .....	40
⑮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황 .....	42
⑯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내역 .....	44
⑰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현황 .....	46
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현황 .....	48
⑲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현황 .....	50
⑳ 계열회사간 채무보증현황 .....	52
㉑ 계열회사간 담보제공현황 .....	56
<b>7. 공시절차</b> .....	58
<b>8. 수탁기관의 업무</b> .....	62
<b>9. 위반시 제재</b> .....	62

<b>II.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제도</b> .....	63
<b>1.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b> .....	64
<b>2. 주요용어 설명</b> .....	67
<b>3. 적용대상 회사</b> .....	68
<b>4.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b> .....	69
①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사항 .....	72
② 임원의 변동사항 .....	75
③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사항 .....	77
④ 비유동자산 취득 .....	78
⑤ 비유동자산 처분 .....	80
⑥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	82
⑦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	84
⑧ 증여결정 .....	86
⑨ 수증 .....	88
⑩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결정 .....	90
⑪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92
⑫ 타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정 .....	94
⑬ 채무인수 결정 .....	96
⑭ 타인에 의한 당사의 채무면제 .....	98
⑮ 유상증자 결정 .....	100
⑯ 무상증자 결정 .....	106
⑰ 유무상증자 결정 .....	107
⑱ 감자 결정 .....	114
⑲ 전환사채발행 결정 .....	116
⑳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119
㉑ 영업양도 결정 .....	123
㉒ 영업양수 결정 .....	124
㉓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 결정 .....	126
㉔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의 계약 변경·해지 결정 .....	128
㉕ 회사합병 결정 .....	130
㉖ 회사분할 결정 .....	132
㉗ 회사분할합병 결정 .....	134

28	주식교환·이전	136
29	해산사유 발생	137
30	회생절차 개시결정	138
31	회생절차 종결결정	139
32	회생절차 폐지결정	140
33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41
3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142
35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	143

<b>5. 유의사항</b>	144
----------------	-----

<b>6. 공시절차, 수탁기관의 업무 및 위반시 제재</b>	145
-----------------------------------	-----

**<참고 자료>**

<b>#1. 관련 공정거래법령 규정</b>	147
<b>#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b>	156
<b>#3 과태료 규정</b>	166
<b>#4 질의응답 모음(기업집단현황 공시)</b>	172
<b>#5 질의응답 모음(비상장회사 수시공시)</b>	179

## I.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1. 도입 배경 / 3
2. 제도의 개요 / 5
3. 법적근거 및 필요성 / 7
4. 주요용어 설명 / 8
5. 적용대상 회사 / 10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 12
7. 공시절차 / 58
8. 수탁기관의 업무 / 62
9. 위반시 제재 / 62

## 1 도입배경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토록 하는 제도

### 도입배경

-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09.3.3, 국회통과)하는 대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게됨

### **알아두기**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와 기존의 공시·공개제도의 차이점

-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를 공개하는 제도와 중복되지 않나요?
  - 정보공개 제도는 출자현황 등 소유지배에 관련된 정보만을 공정위가 공개하는데 비해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는 소유지배구조 외에 해외계열사 현황, 거래현황 등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차이
- 기존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등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존의 공정위 공시제도,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등은 개별회사가 개별 거래건에 대해 공시하는 제도로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
-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로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 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간 지배-종속관계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고, 결합재무제표는 2009년의 경우 작성 기업집단이 14개에 불과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음(결합재무제표는 2012년 1월 1일부터 폐지 예정)

## 기대효과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도입·시행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방식이 출자규제 등 ‘정부주도의 사전규제’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사후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금번 제도 시행으로 기업집단 전체 현황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됨에 시장감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임
  - 시장감시(market monitor)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도입의 영향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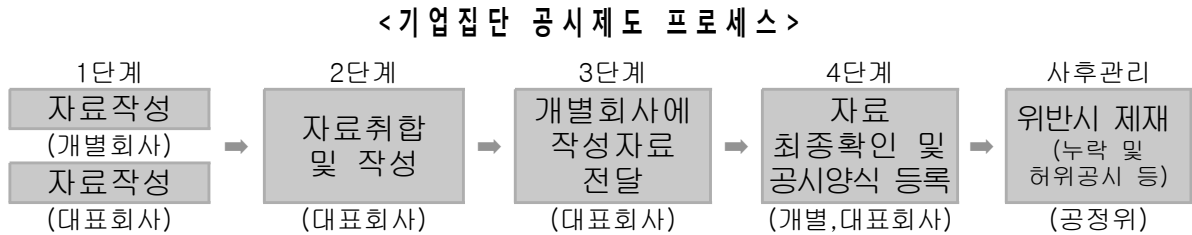
### 📖 **알아두기**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도입으로 달라지는 기존 공시제도 내용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공시의무가 조정되거나 대체되는 것은 없나요?
  -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정기공시사항(최대주주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계열사 주식보유현황, 계열사와 상품용역거래 내역)은 기업집단현황 공시사항에 통합되었고, 수시공시사항은 그대로 존치
  -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은 폐지

## 2 제도개요

### 공시제도의 운영 프로세스



#### ■ 공시사항 작성 : 개별회사(원칙) + 대표회사(예외)

-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기본적으로 소속 계열회사의 정보로 구성되는 만큼 개별회사가 자기회사의 공시내용을 작성

#### ■ 공시내용 취합 : 대표회사

- 기업집단 공시제도가 개별 계열회사의 정보를 취합한 것인 만큼 기업집단의 대표회사가 기업집단 전체 공시사항을 최종 취합

\* 기업집단 스스로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청·확인을 받음

#### ■ 공시주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자기회사 공시사항 및 개별회사로부터 취합한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전체 현황 중 자기회사 관련사항만 공시하고 기업집단 전체현황은 대표회사 공시를 참조할 것을 기재(참조공시)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I)회사의 개요는 대표회사가 공시)

##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 분기별 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의 변경빈도 · 기업의 작성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은 분기별 또는 연1회 공시
  -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은 분기별 공시(⑩~⑳ 항목), 다만 상품·용역거래(⑮·⑯) 및 채권채무잔액현황(⑲)은 연1회 공시
  -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소유지분현황은 연1회 공시(상기 ①~⑨ 항목)
- 분기별 공시사항은 분기 종료후 60일 이내(2·5·8·11월말일)에, 연1회 공시사항은 1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5월31일)까지 공시
  - 계열회사별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 계열사 간 거래가 없어 공란이 생길 경우 삭제가 가능하며, 해당 양식에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양식을 삭제하고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가능
- 공시 대상 회사가 통상적인 12월말 결산 법인이 아닌 경우, 회사의 결산일에 맞춰 공시 가능
  - 예를 들어 11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1/4분기 공시는 12월부터 2월말까지 결산한 내용을 공시

### 3 법적근거 및 필요성

#### 법적 근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기업집단현황 공시대상 회사의 범위, 공시사항 및 공시시기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1
  - 공시대상 회사, 공시사항 및 공시시기를 대략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일반현황, 임원현황, 소유지분현황, 출자현황, 거래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기별, 연1회 공시하도록 규정

#### 고시운용의 필요성

- ▣ 법적용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 공시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 ☞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범위반행위를 사전 예방

## 4 주요용어 설명

### 기업집단 대표회사

-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표로 계열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

### 동일인

- 동일인의 의미
  - 당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 동일인 관련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
- 동일인의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 혈족은 민법 제768조에 의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인척은 민법 제769조에 의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일인 배우자의 부모는 해당, 동일인 자녀의 배우자 부모는 미해당)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만,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경영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귀속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됨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 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을 말함
  -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의미

### 최대주주

- 당해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함
- 최대주주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때 동일인 뿐만 아니라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함

## 5 적용대상 회사 및 공시책임

###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모든 소속 회사.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연도중 편입·제외된 경우

- 편입통지일, 계열제외 통지일을 기준으로 공시 대상 여부를 판단
-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편입통지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의 해당사항을 공시
  -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편입된 회사와의 거래내역 중 계열 편입된 날 이전까지의 거래내역은 ‘기타’에 기재하고, 계열 편입일 이후 거래내역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 4월에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작성양식 ①~⑩까지만 작성. 나머지 양식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
    - \* 만일 5월에 편입된 경우 2/4분기 공시부터 공시의무 발생
- 계열 제외된 회사 또는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 제외 또는 지정 제외 통지일로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 제외된 회사와의 거래 내역 중 계열 제외된 날 이전까지의 거래내역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계열 제외된 날부터의 거래내역은 ‘기타’에 포함하여 기재
    - \* 만일 5월에 제외된 회사의 경우 1/4분기 공시부터 공시 면제. 다만 해당 회사와 거래한 회사의 경우 거래 내역은 공시

## 공시책임

- ▣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별회사가 허위·미공시의 책임을 짐
- ▣ 다만,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취합·공개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집단 대표회사’와 ‘개별회사’의 역할을 구분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로부터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은 최종 작성책임
  -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를 취합·공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고, 자기회사 공시사항을 공시할 의무

##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 ◆ 주요 공시항목은 ①기업집단 일반현황 ②임원 및 이사회 등 현황 ③주식소유현황 ④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등 4개 범주로 크게 구분되고 이는 20개 항목으로 세분류
- ◆ 일반현황은 재무·손익현황 등 5개,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2개, 주식소유현황 2개,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기타자산거래 등 11개 항목으로 총20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항목별로 분기 또는 연1회 공시

[표3] 항목별 공시내용 및 공시빈도

공시항목(4)	공시내용(21)	빈도
일반현황(5)	①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②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③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④ 해외계열회사 현황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연1회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2)	⑥ 임원의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및 변동사항 ⑦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연1회
주식소유현황(3)	⑧⑨ 소유지분현황 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연1회 (단, ⑩는 분기)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11)	⑪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현황 ⑫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⑬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⑭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⑮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⑯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⑰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⑱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산거래 현황 ⑲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⑳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㉑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분기 (단 ⑮·⑯·⑲는 연1회)

\* 연1회 공시사항은 5.31일 기한, 분기별 공시사항은 2·5·8·11월말일 기한 내 공시

## ① 회사개요

### ▣ 공시주체

-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의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 회사가 작성하여 공시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회사의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업종, 종업원수, 기업공개 여부, 결산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 단,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 회사들의 계열편입일은 지정일이 아니라 회사 설립·지분취득 등으로 인하여 계열 관계가 성립된 날을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회사개요를 취합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자기회사를 기업집단 전체현황 공시양식의 최상단·최좌측에 기재하고, 별도의 개별회사 공시양식은 작성하지 않음(이하 모든 공시사항에 있어서 동일)

### ▣ 공시기준일

- 당해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일 6·9·12월에 속한 경우)을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에 속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 <작성양식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명)

계열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계열편입일	업종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비 금 용 회 사	A(①)	②	③	④	⑤	⑥	⑧
	B						
	...						
금 용 회 사	C						
	D						
합계	-	-	-	-	⑨	⑩	-

### 기재요령

- ①에는 공정위가 매년 4월에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계열회사명을 기재한다.
- ②에는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공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한다.
- ③에는 당해 회사의 설립일을 기재한다.
- ④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한다.
- ⑤에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세자리분류)의 코드번호와 영위업종명을 기재한다.
- ⑥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월급여간이세액(A01)의 총인원]를 기재한다.
- ⑦에는 공시일 현재 유가증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상장', 공개기업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한다.
- ⑧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일자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한다.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⑨, ⑩에 합계를 기재하되, ⑩에는 기업집단 내 공개 기업의 수를 기재한다.

## ② 재무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회사의 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차입금,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자본금, 자본총계) 및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개별 재무제표 상 사업연도말 결산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작성
  - 금융보험을 영위하는 회사는 '유동자산'에는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비유동자산'에는 유형자산과 기타자산, '유동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등, '비유동부채'에는 기타부채를 기재
  - 한편,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입금'에는 유동성장기차입금도 포함된 전체 차입금을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재무현황을 취합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 공시기준일

- 당해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일 6·9·12월에 속한 경우)을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에 속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계열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현금및 현금성자산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자산 총계	차입금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부채 총계	자본금	자본 총계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										
	소계										
금 용 회 사	C	①	②	③		④	⑤	⑥			
	D										
	소계										
합계								⑧		⑨	⑩

### 기재요령

1. ②에는 ①을 포함한 금액을, ⑤와 ⑥에는 ④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2. ④에는 재무상태표상 장단기 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중 차입금 등 모든 차입금을 기재한다.
3. 금융업의 경우 다음의 계정과목의 금액을 기재한다. ② :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③ : 유형자산, 기타자산, ⑤ : 예수부채, 차입부채 등, ⑥ : 기타부채
4. ⑦에는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을 ○○.○○% 양식으로 기재한다.(자본잠식인 경우 '자본잠식'으로 기재)
5.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⑩에 기업집단전체의 부채비율[기업집단 부채총계(⑧)를 기업집단 자본총계(⑨)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

### ③ 손익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회사의 매출액(금융업의 경우 영업수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개별 재무제표 상 사업연도말 결산일 기준 손익계산서상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작성
- \* IFRS 도입으로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손익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당기 순이익이 없을 경우 당기순이익에 준하는 순이익을 공시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손익현황을 취합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 공시기준일

- 공정위의 당해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일 6·9·12월에 속한 경우)을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에 속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3>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계열회사명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비금융 회사	A					
	B					
	소계					
금융 회사	C	①		②	③	
	D					
	소계					
합계						

### 기재요령

1. 금융업의 경우 ①에는 영업수익을 기재한다.
2. IFRS 도입으로 영업외손익을 공시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없음”으로 기재한다.
3. IFRS 도입으로 당기순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그에 준하는 순이익을 기재한다.

#### 4] 해외계열회사 현황

##### ▣ 공시주체

- 해외계열사의 최다출자자인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해외계열사의 회사명,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최다출자자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해외 계열사 여부는 국내 계열사와 동일한 기준(30% 이상 최다출자자 기준, 실질 지배력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

- \* 외국계 기업집단의 동일인 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은 국내법인 중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외 계열사에는 포함되지 않음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해외계열사 현황을 취합하여 최다출자자를 기준으로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예시 >

계열회사명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최다출자자	최다출자자 지분
A	...	...	...	...	가	...
B					가	
C					나	
D					나	
E					나	
...					...	
합계						

## ▣ 공시기준일

- 당해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일 6·9·12월에 속한 경우)을 기준으로 작성
  - 결산일이 3월에 속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4>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계열회사명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최대출자자	최대출자자 지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합계	⑧	-	-	-	-	

### 기재요령

1. ①에는 해외계열사명을 기재한다.
2. ②에는 당해 회사의 영위업종을 간략하게 기재한다(예, 반도체 판매업, 건설업, 무역업 등)
3. ③에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합하여 기재한다.
4. ④에는 소재국을 미국 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한다.
5. ⑤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일자(연월일(0000.00.00) 형식)로 기재한다.
6. ⑥에는 당해 회사의 최대출자자명을 기재한다.
7. ⑦에는 ⑥에 기재한 최대출자자의 지분율을 기재한다.
8.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⑧에 해외계열사의 총 개수를 기재한다.

##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 ▣ 공시주체

- ‘계열편입’은 편입된 회사가 작성·공시하고, ‘계열제외’는 대표 회사가 작성·공시

- 다만, 해외 계열사 변동내역은 최다출자자가 공시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국내 및 해외 계열회사 변동내역을 편입과 제외로 구분하여 계열회사명, 변동사유, 변동일자, 업종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해외 계열사는 지분 취득·매도일에 준하여 변동일자를 공시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계열회사 변동내역을 취합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 공시기준일

- 공정위의 전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부터 당해연도 지정일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이 2009.4.1, 2010.4.15.인 경우, 2010년 5월 공시는 2009.4.1.부터 2010.4.14.까지를 기준으로 함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 <작성양식 5>

(전년도 지정일 ~ 당해연도 지정일 전일 기준)

계열회사명	변동사유	변동일자	업종
⑤편입 00개			
1. △△△△ ①	②	③	④
⑤제외 00개			
1. △△△△ ①	②	③	④
⑤순증 00개			

### 기재요령

- ①에는 해당 기간 중 편입·제외된 계열회사명을 편입·제외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기재한다.
- ②에는 변동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한다.(예: 편입-회사설립·지분취득·기타 등, 제외-합병·지분매각·청산종결·친족분리·지정제외·기타 등)
- ③에는 당해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편입·제외일로 통지 받은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한다.
- ④에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세자리분류)의 코드번호와 영위업종명을 기재한다.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에 편입·제외 후 해당 기간 내 계열사의 편입 회사수, 제외 회사수, 순증가(감소)계열사 수를 기재한다.[2개(감소는 △2개)로 표시]

## ⑥ 임원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회사 임원의 성명, 직위, 사외이사 여부, 등기일, 동일인과 친족 관계 여부, 겸직사항(타사에서 등기임원인 경우 기재), 주요경력, 전기대비 변동사항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이사 및 감사에 한하여 작성

- 직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로 구분하여 공시

\* 개정 상법(09.2월) 시행 이전에 등기된 임원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구분 외의 직책으로 등기된 경우 실질에 의해 기재

- 주요 경력은 현 직위를 부여받기 직전 경력(회사명, 직위)을 기재하되, 최근 5년 이내 계열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인 경우 '퇴직 임직원'란에 별도로 퇴직한 계열사와 직위를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임원현황을 취합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 공시기준일

- 당해연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 <작성양식 6>

(당해연도 4.30. 기준)

계열회사명	임원명	직위	등기일	동일인과 친족관계	겸직사항	주요경력	퇴직임직원	중임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비 금융 회사	A							
	B							
금 융 회 사								

### 기재요령

- ①에는 당해 회사의 임원명(任員名)을 기재한다.
- ②에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 ③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 등재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한다. 중임된 경우는 최초 등기일을 기재한다.
- ④에는 동일인과 친족관계(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혈족○촌’ 또는 ‘배우자’ 등으로 기재하고,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는 ‘-’로 표시한다.
- ⑤에는 당해 임원이 등기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명을 기재하고, 다른 회사가 계열사인 경우 △△△(계열), 비계열회사인 경우 ○○○으로 기재한다. 한편, 해외에서 이사에 준하는 직위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기재한다.
- ⑥에는 현 직위를 부여받기 직전의 경력(회사명, 직위)을 기재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계열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인 경우 ⑦에 별도로 기재한다.
- 최근 5년 이내 계열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인 경우 ⑦에 퇴직한 계열사명 및 퇴직 직전의 직위를 기재한다.
- ⑧에는 해당 임원의 중임 여부에 따라 신임, 중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계약 기간 종료 후 임원이 중임된 경우에만 중임으로 기재)

## ㉓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이사회 운영현황

- 회사 이사회의 구성원명,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 및 총 사외이사수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회사 이사회내 위원회의 명칭, 구성원명, 설치목적 및 권한,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 및 총 사외이사수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sup>1)</sup>(예,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한하여 기재

1)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위원회가 해당기간 중 실제 회의를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포함하여 기재

## ●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 회사가 상법상 서면투표제(제368조의3<sup>2</sup>) 및 전자투표제(제368조의4<sup>3</sup>), 집중투표제(제382조의2<sup>4</sup>) 등을 도입·시행하는지 여부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집중투표제 등의 경우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재

### 2]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382조의2 (집중투표)

-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 목적을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이사회 운영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을 취합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 공시기준일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등의 구성원명,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은 당해연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에서 안건은 모든 안건을 기재하고, 각 안건별로 가부결 여부 등을 표시(단순보고안건은 제외 가능)
  - 다만, 이사회 운영현황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현황의 구성원 명란에는 개최일 기준 구성원명(構成員名)을 기재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등의 회의개최실적은 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7>

#### 이사회 운영 현황

(전년도 5.1. ~ 금년도 4.30. 기준)

계열회사명		이사회 구성원명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수	사외이사 총수
		①	②	③	④	⑤	⑥
비금융 회사	A						
	B						
금융 회사	C						
	D						

#### 기재요령

1. ①에는 ②에 기재한 개최일 기준 이사회 구성원명(構成員名)을 기재한다. 다수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 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②에는 이사회내 회의 개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한다.
3. ③에는 의안제목을 간단하게 기재한다(예, ①해외법인 설립의 건, ②OO계약체결의 건, ③OOO 관련 증자에 관한 건 등)
4. ④에는 의안제목별로 가결여부를 ‘가결’, ‘부결’ 등으로 표시한다.

5. ⑤에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 인원수를, ⑥에는 사외이사 총수를 기재한다.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전년도 5.1. ~ 금년도 4.30. 기준)

계열회사명	위원회명	구성원명	설치목적 및 권한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수	사외이사 총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비금융회사	A								
	B								
금융회사	C								
	D								

**기재요령**

- ①에는 위원회명을 기재하되, 실제 위원회가 해당 기간 중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 ②에는 ④의 개최일자의 해당 위원회 구성원명(構成員名)을 기재한다. 다수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 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③에는 설치 목적 및 권한을 간단하게 기재한다.(예, 설치목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설치. 권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 ④~⑧은 상기 표(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다만, ⑧의 사외이사 총수라 함은 해당 위원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총수를 의미한다.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당해연도 4.30. 기준)

계열회사명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비고	
비금융회사	A	①	②	③	④
	B				
	⑤소계				-
금융회사	C				
	D				
	⑤소계				-
⑥합계				-	

**기재요령**

- ①~③에는 각 제도의 도입·시행 여부를 O, X 로 기재하되,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O로 기재한다.
- ④에는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상법의 일반원칙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한다.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 ⑥에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한 비금융 계열회사, 금융 계열회사, 전체 계열회사의 수를 각각 기재한다.

## 89 소유지분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개별회사(공시회사)의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측과 기타주주로 구분하여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동일인측 범주: 동일인, 배우자/혈족1촌, 혈족 2~4촌, 혈족 5~6촌, 인척 4촌이내, 비영리법인, 등기된 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

- 기타주주 범주: 동일인측이 아닌 최대출자자\*, 기타

\* 동일인측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임원겸임으로 계열사로 편입되었거나 해외 투자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등)에만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최대출자자)를 기재

\* 동일인측의 보유지분은 있으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동일인측은 '동일인측'란에, 최대출자자는 '기타주주-동일인측이 아닌 최대출자자'란에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 공시기준일

- 당해연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8, 9>

(당해년도 4.1. 기준, 단위:주, %, 백만원)

계열사명	동일인과의 관계	성명	보통주		우선주		합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비 금융 회사	A	동일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친 족	배우자/ 혈족1촌							
			혈족2~4촌							
			혈족5~6촌							
			인척 4촌 이내							
			⑧ 친족 합계	<del>X</del>						
			비영리법인							
		등기된 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								
		⑨ 동일인측 합계	<del>X</del>							
		기타 주주	동일인측이 아닌 최다주주	⑩						
			기타	<del>X</del>	⑪					
		총 계	<del>X</del>		⑫	100%		100%		100%
		B	...							
C	...									
D	...									

### 기재요령

- ①의 '동일인'이란 당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②와 ③에는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에 대한 보통주 주식수와 지분율(동일인 보유 보통주식수를 A회사 발행 총보통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지분율은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이하 동일)
- ④와 ⑤에는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에 대한 우선주 주식수와 지분율(동일인 보유 우선주 주식수를 A회사 발행 총우선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
- ⑥에는 ②와 ④의 합계를, ⑦에는 A회사 발행 총 주식수에 따른 지분율을 기재한다.
- ⑧에는 A회사에 대한 친족(배우자/혈족1촌, 혈족2~4촌, 혈족 5~6촌, 인척 4촌 이내)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한다.
- ⑨에는 동일인측(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한다.
- ⑩에는 동일인측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최대출자자)명을 기재하고 해당 주주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한다.(A회사에 대해 동일인측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측'란에 동일인측 주식수·지분율을, 최대출자자는 '기타주주-동일인측이 아닌 최대출자자'란에 보통주·우선주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한다.)
- ⑪에는 A회사 주주 중 ⑨과 ⑩을 제외한 기타 주주 전체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한다.(동일인측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⑨를 제외한 기타 주주 전체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⑫에는 A회사 발행 총 주식수를 기재한다.

## 10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공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 주식수, 지분율을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기간까지 공시

- 보통주, 우선주, 합계(=보통주+우선주)로 구분하여 기재
- 장부가액란에는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을 기재하되,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이 없거나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검토보고서 내지 직전 사업연도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재. 다만, 공시정보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주석 등의 방법으로 표시

예) 지분율에 변동이 있거나 배당금을 받은 사유 등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분기말 장부가액에 미반영한 경우 등

- 자기주식도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하여 주식수, 지분비율 및 장부가액을 기재
- 보유주식수 및 보유지분비율 계산방식은 '8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주식소유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계열회사간 출자 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 공시기준일

-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0>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주, %, 백만원)

출자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A	B		· ·	소계	C	· ·	소계		
피출자회사				주식수	지분율							
계 열 회 사	비 금 용 회 사	A	장부가액	①								
			보통주	②	③							
			우선주	④	⑤							
			합계									
		B		⑥								
		· ·										
		장부가액 소계			⑦							
		금 용 회 사	C									
			D									
			· ·									
		장부가액 소계			⑦							
	합계			⑧								

### 기재요령

- ①에는 B사가 보유한 A회사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재한다.
- ②(④)에는 B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보통주식수(우선주식수)를 기재하고, ③(⑤)에는 그 지분율을 기재한다.
- ⑥에는 B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하여 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을 기재한다.
- ⑦과 ⑧에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장부가액 각각의 합계와 전체 장부가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 111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차입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차입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차입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국내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분기 중에 차입한 금액을 각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에 백만원 단위로 공시

- 자금차입약정 등을 통한 차입금에 한하여 기재하며
- 다음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 : 사채·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가수금, 제품·원자재 등 수입에 따른 외화 단기차입금(Usance, 유산스만 제외), 콜차입·만기 7일 이내 증권 금융 차입, 매출채권 매각 거래로 인해 발생한 단기차입금
- 기간 내 차입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도 상환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액을 기재하며, 만기 연장된 금액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된 금액만을 기재

예) ① 2009년 2분기동안 동일 계열회사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한 후 같은 분기동안 30억원을 상환한 경우에도 100억원으로 기재.

② 직전 분기에 30억원 차입 후 당 분기에 연장한 경우 30억원을 기재

- 은행 등과 여신한도 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 분기말 실제 잔액을 기재(당좌차월·마이너스 통장 형태 등의 경우도 동일) 다만, 당좌차월(당좌차월만 해당) 약정 한도는 별도 양식에 기재

\* 당좌차월 잔액은 두 양식 모두에 기재, 당좌차월 한도는 별도 양식에만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차입금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자금 차입·대여 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공시기준일

-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1>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차입현황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차입회사 \ 대여자		계열회사							기타 합계	총 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A	B	..	소계	C	..	소계		
비 금 용 회 사	A									
	B	①			②			③	④	⑤
	..									
	소계	⑦								
금 용 회 사	C									
	D									
	..									
	소계	⑧								
합계		⑨								

기재요령

1. ①에는 B사가 A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2. ②와 ③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와 금융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한다.
3. ④에는 B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②+③)를, ⑤에는 국내 계열사를 제외한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⑥-④)를, ⑥에는 전체 차입 금액의 총계를 기재한다.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⑦~⑨에 모든 계열회사가 A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당좌차월 약정 한도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당좌차월을 약정한 회사		당좌차월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약정 한도	분기말 당좌차월 잔액	약정 기간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소 계				
	B				
	비금융회사 합계			④	
금 용 회 사	C				
	D				
	금융회사 합계			⑤	
전체 계열회사 합계				⑥	

### 기재요령

- ①, ②에는 A사가 직전 분기말 유효한 모든 당좌차월을 건별로 약정 한도, 분기말 당좌차월 잔액을 기재한다.
- ③에는 약정기간 기재한다.(예) 2010.2월~2011.3월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④~⑥에 분기말 당좌차월 등의 잔액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대여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대여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에 공시
  - 범주는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친족(혈족6촌, 인척4촌 이내. 배우자·혈족1촌은 제외), 임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
  - 기간 내 차입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도 상환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액으로 기재하며, 만기 연장된 경우에는 만기 연장된 금액만을 기재(기재요령은 작성양식 '11계열회사로부터 자금차입 현황'과 동일)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대여금 현황을 각각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범주별로 합산

### ▣ 공시기준일

-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 <작성양식 12>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대여회사		관계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④	
	B						
	소계						
금 용 회 사	C						
	D						
	소계						
합계							

### 기재요령

1. ①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2. ②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3. ③에는 A사가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4. ④에는 A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13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유가증권 매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매도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국내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의 매도가액(매도함으로서 받은 대가)을 각 계열회사 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에 공시
  - \* 매도에는 매각 뿐 아니라 제공, 발행 등도 포함된 개념이므로 유상증자, 교환 등을 통해 제공한 경우도 포함(수익증권의 환매, 채권이나 CP 매입 후 상환 등은 공시 대상이 아님)
  - \* 장부가액 100원인 매도가능증권을 150원에 매도한 경우 150원을 기재
  - \* 감자 ①공시대상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미공시 대상, ②공시대상회사가 유상감자에 참여한 경우: 감자 대가로 받은 대가 등을 공시
- 유가증권은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 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 다만, 7일 이내 기업어음은 제외
- \* A사가 B사(금융회사)를 통해 C사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
  - B사가 단순중개한 경우(①) : 상대방(C)이 계열회사인 경우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기재
  - B사가 매입한 경우(②) : A사의 매도 금액은 B사의 계열사 여부에 따라 유가증권거래현황에 기재(계열사인 경우에만 기재), B사의 매도 거래도 매입자(C)의 계열사 여부에 따라 유가증권거래현황에 기재(계열사인 경우에만 기재).
  - B사의 중개수수료는 ①, ②에 상관없이 유가증권거래현황에는 미기재하나, 상품·용역 거래 현황에는 기재.
  - 매입자(C)의 매입거래는 ①, ② 및 계열 여부에 상관없이 미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유가증권 매도·매입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공시기준일

-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13>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도회사 \ 매입자		계열회사							합계 (매도금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A	B	..	소계	C	..	소계	
비금융회사	A								
	B	①			②			③	④
	..								
	소계	⑤							
금융회사	C								
	D								
	..								
	소계	⑥							
합계		⑦							

기재요령

1. ①에는 B사가 A사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금액을 기재한다.
2. ②와 ③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와 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한다.
3. ④에는 B사가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②+③)를 기재한다.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⑦에 모든 계열회사가 A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14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유가증권 매도·매입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유가증권 매도거래 현황

- 매도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매도금액(매도한 유가증권 가액이 아니라 장부에 기재한 매도가액)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직전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
- 범주는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친족(혈족6촌, 인척4촌 이내. 배우자·혈족1촌은 제외), 임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

#### ● 유가증권 매입거래 현황

- 매입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 매입금액(장부가액)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직전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
- 유가증권 매도거래 현황과 동일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유가증권 매도·매입 거래 현황을 각각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범주별로 합산

### ▣ 공시기준일

-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 <작성양식 14>

#### 유가증권 매도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도회사		관계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 회사	A		①	②	③	④	⑤
	B						
	소계		⑥				
금융 회사	C						
	D						
	소계		⑦				
합계			⑧				

#### 유가증권 매입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회사		관계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 회사	A		①	②	③	④	⑤
	B						
	소계		⑥				
금융 회사	C						
	D						
	소계		⑦				
합계			⑧				

#### 기재요령

- ①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가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②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가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③에는 A사가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가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④에는 A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가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⑤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매입)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①+②+③+④)를 기재한다.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⑧에 모든 계열회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에게 매도하거나 이들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15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상품·용역 매출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상품·용역매출회사(공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동안 국내 계열회사와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판매한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상품·용역 거래란 손익계산서 상 매출(금융사의 경우는 영업수익)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을 의미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상품·용역 매출·매입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15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는 공시 대상 회사 전체 매출액을 계열사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16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에는 '작성양식 15'에 기재된 계열회사 매출 거래 중 공시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거래의 내역을 기재

### ■ 공시기준일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함

예) 2010년 5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결산일이 12월인 법인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결산일이 3월인 법인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5>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출회사	매입자	계열회사						합계 (매출액)	기타 합계 (매출액)	총 계 (매출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A	B	· ·	소계	C	· ·			
비 금 용 회 사	A									
	B	①			②			③	④	⑤
	· ·									
	소계	⑦								
금 용 회 사	C									
	D									
	· ·									
	소계	⑧								
합계		⑨								

### 기재요령

- ①에는 B사가 A사에게 대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금융사의 경우 영업수익, 이하 동일)을 기재한다.
- ②와 ③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와 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를 각각 기재한다.
- ④에는 B사가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②+③)를, ⑤에는 계열회사 외의 자에 대한 매출 합계(⑥-④)를, ⑥에는 전체 매출액의 총계를 기재한다.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⑦~⑨에 모든 계열회사가 A사에게 매출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16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 ▣ 공시주체

- 개별회사(상품·용역 매출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상장 여부, 금융 여부 관계없이 모든 회사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을 공시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계열회사와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공시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매월 5월 31일까지 공시

- 매출이 발생한 건별로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단가, 대금지급 조건, 매출액 등을 기재(단가·대금지급조건 등이 영업비밀인 경우 미공시 가능)

- 다만, 건별 금액이 공시회사 매출액의 1% 미만인 경우는 합산하여 공시 가능. 합산 기재 시 매출액이 가장 큰 상품을 대상으로 업종, 품목 등을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중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재

### ▣ 공시기준일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함

예) 2010년 5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결산일이 12월인 법인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결산일이 3월인 법인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6〉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단가	대금지급조건	매출액
비금융회사	①	②				③
		소 계				
	A사 소계					
B						
비금융회사 소계						⑥
금융회사	C					
	D					
	금융회사 소계					
전체 계열회사 합계						⑧

### 기재요령

- ①에는 당해 회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한 계열회사(매입회사)를 기재한다.
- ②에는 ③과 관련된 A사의 거래업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세자리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 ④에는 공시 회사의 개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소계를 기재한다.
- ⑤에는 공시 회사의 모든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합계를 기재한다.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⑧에 계열회사별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합계, 금융회사 소계, 전체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17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기타자산 매도·임대·리스 등을 한 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기타 자산이란 공시 대상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유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을 의미
- 매도(임대, 리스 등 포함함. 이하 동일)한 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기타자산 매도금액(기타자산매도대가)**을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

- **거래에서 발생한 매도대가(처분가액, 임대료, 리스료 등)를 기재.** 자산의 장부상 처분가액을 기재하므로 각종 평가손익·처분손익·환산손익 등은 추가로 기재하지 않음

예) 장부가 50억원인 건물을 외화로 80억원에 매도(부가세 제외)하여 처분이익 30억원, 기말에 미수금의 환산이익 5억원이 발생한 경우 매도가액인 80억원만을 기재

\* 임대보증금은 기재 대상이 아님

\* 임대한 자산의 책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도 기재

\* 임대 건물의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임대료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건물, 기계장치, 무형자산(상표권 등) 등의 자산이 재무상태표 상에 유무형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관련 임대료, 사용료 등을 손익계산서 상 매출로 계상할 경우 본 양식에 기재하지 않고 15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 양식에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을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 공시기준일

-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2009년 8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7>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도회사		매입자	계열회사						합계 (거래금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A	B	· ·	소계	C	· ·	
비금융 회사	A								
	B	①			②			③	④
	· ·								
	소계	⑤							
금융 회사	C								
	D								
	· ·								
	소계	⑥							
합계		⑦							

### 기재요령

1. ①에는 B사가 A사에게 기타자산을 매도(임대, 리스 등을 포함. 이하 동일)한 거래 금액(처분가액)을 기재한다.
2. ②와 ③에는 B사가 기타자산을 비금융 계열회사와 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금액(처분가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한다.
3. ④에는 B사가 계열회사에게 기타자산을 매도한 금액의 합계(②+③)를 기재한다.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⑦에 모든 계열회사가 A사에게 기타자산을 매도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18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 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기타자산 매입·매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기타 자산이란 공시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유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을 의미

#### ● 기타자산 매도 거래 현황

- 매도(임대, 리스 등 포함. 이하 동일)한 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기타자산 매도장부가액(기타자산매도 대가)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직전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

\* 범주: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친족(혈족6촌, 인척4촌 이내. 배우자·혈족1촌은 제외), 임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

#### ● 기타자산 매입 거래 현황

- 매입(임차, 리스 등 포함. 이하 동일)한 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로부터 매입한 기타자산 매입장부가액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기타자산 매도·매입 거래 현황을 각각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범주별로 합산

### ▣ 공시기준일

-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2009년 8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8>

### 기타자산 매도 등 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도회사명		관계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회사	A		①	②	③	④	⑤
	B						
	소계		⑥				
금융회사	C						
	D						
	소계		⑦				
합계			⑧				

### 기타자산 매입 등 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회사명		관계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회사	A		①	②	③	④	⑤
	B						
	소계		⑥				
금융회사	C						
	D						
	소계		⑦				
합계			⑧				

### 기재요령

- ①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과 기타자산(이하 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 ②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과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③에는 A사가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과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④에는 A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과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⑤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매도(매입)한 기타자산 금액의 합계(①+②+③+④)를 기재한다.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⑧에 모든 계열회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에게 매도하거나 이들로부터 매입한 기타자산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19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債權)·채무잔액 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채권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채권회사(공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債權)잔액을 각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거래상대방별 채권 잔액을 기재하되, 실물채권과 금융채권의 장부상 잔액을 백만원 단위로 별도 기재
  - 다음의 채권 잔액을 기재(회사의 재무상태표상 분류 기준을 준용)
    - 실물 채권 :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보증금 잔액
    - 금융 채권 : 대여금, 유가증권 중 회사채 잔액
    - 금융사의 경우 실물채권에는 미수금·선급금·보증금을, 금융채권에는 대출채권을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채권 잔액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채권·채무잔액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 공시기준일

- 공정위의 당해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함

예) 2010년 5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결산일이 12월인 법인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결산일이 3월인 법인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 <작성양식 19>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채권 회사	채무자	계열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채권금액)	
		A			..			소계			C			..			소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비금융 회사	A																				
	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소계																				
금융 회사	C																				
	D																				
	..																				
	소계																				
합계																					

### 기재요령

- ①에는 B사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실물채권(매출채권, 미수금, 선금금, 보증금)잔액을, ②에는 B사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금융채권(대여금, 유가증권 중 회사채) 잔액을, ③에는 ①과 ②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 ④와 ⑤에는 B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와 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 잔액을 각각 기재한다.
- ⑥에는 B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실물채권 합계액을, ⑦에는 비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채권 합계액을, ⑧에는 ⑥과 ⑦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 기업집단대표회사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합계란을 기재한다.

## 20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보증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 보증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말 존재하는(유효한)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금액을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에 공시

#### 📖 **알아두기**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사 제외)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무보증'을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으로 규정

\* '여신'이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의미

##### ■ 공정거래법상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라 함

- 채무보증 건별로 채무보증받은 회사, 금융기관, 여신금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등을 기재

\* 여신금액은 여신 잔액을 기재하되, 당좌차월·어음할인과 같이 한도약정을 맺은 경우는 당해 한도를 여신으로 기재

- \* 채무보증금액은 채무보증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재하고, 채무보증약정 후 여신의 발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채무보증금액란에는 보증약정금액을 기재
- \* 외화표시 채무보증일 경우 분기말의 금융결제원 고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다만, 회사 내에 별도로 적용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사용 후 주석 기재)

###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 보증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말 존재하는(유효한)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금액을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에 공시
- 채무보증 건별로 채무보증받은 회사,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등을 기재
  - \* 기재방식은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과 동일
  -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이므로 조합, 개인, 해외 계열사 등에 대한 채무보증도 포함하여 기재
- 다만,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은 별도란에만 기재
  - \* ‘이행보증·납세보증 등’란에는 타인을 위한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이므로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자신을 위한 이행보증 등은 제외됨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채무보증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채무보증현황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양식 20에는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뿐 아니라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 대한 채무보증도 공시하나, 양식 21에는 타인을 위하여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담보 현황만 공시

**알아두기**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이란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모든 채무보증을 의미하며, 크게 ‘공정거래법상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구분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은 금융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채무보증(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회사간 직접 차입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 계열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을 들 수 있음

**공시기준일**

-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0>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채무보증한 회사	채무보증 받은 회사	금융기관	여신금액	채무보증 금액	채무보증기간
A		①	②	③	④
	소 계				
	B				
C					
합계			⑤	⑥	

기재요령

1. ①에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한다.
2. ②에는 채무보증을 받은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여신 금액 잔액을 기재한다.
3. ③에는 채무보증금액을, ④에는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한다.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⑥에 모든 계열회사의 여신금액, 채무보증금액 잔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채무보증한 회사	채무보증 받은 자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 금액	채무보증기간
비 금 용 A	계열회사	①	②	③	④

회사	계열회사 외의 자					
		소 계				
	B	..				
	비금융회사 합계			⑤	⑥	
금융회사	계열회사					
		계열회사 외의 자				
	소 계					
	D	..				
	금융회사 합계			⑦	⑧	
전체 계열회사 합계			⑨	⑩		

기재요령

- ①에는 채권자명을, ②에는 채무금액잔액을, ③에는 채무보증금액을, ④에는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한다.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⑩에 모든 계열회사의 채무금액, 채무보증금액 잔액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행보증·납세보증 등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건 수	금액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⑨	①	②
	계		
납세보증		③	④
	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⑤	⑥
	계		
합 계		⑦	⑧

기재요령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중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 수와 보증 금액을 ①과 ②에 각각 기재한다.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납세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 수와 금액을 ③과 ④에 각각 기재한다.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 수와 채무보증 금액을 ⑤과 ⑥에 각각 기재한다.
- 대표회사는 ⑦과 ⑧에 계열회사 전체의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의 건 수와 채무보증 금액을 기재한다.
- ⑨에는 공시 대상 회사(공시 주체)의 사명을 기재한다.

## ㉒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 ▣ 공시주체

- 개별회사(담보제공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담보제공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말 현재 타인을 위하여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물적담보 잔액, 내용, 제공사유 등을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에 공시
  -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는 별도란에만 기재

### **알아두기** 채무보증과 담보제공

- 채무보증과 담보제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 채무보증은 '인적담보'를 의미하며, 담보제공은 물권담보, 예금담보 등 '물적담보'를 의미함. 다만, 백지어음 제공 등 사실상 인적담보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보증에 해당됨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담보제공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취합하되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공시

### ▣ 공시기준일

-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1>

### 계열회사 간 담보제공 내역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제공회사		제공받은 회사	내용	금액	제공 사유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소 계			④	
	B	..			
비금융회사 합계				⑤	
금 용 회 사	C				
	D	..			
금융회사 합계				⑥	
전체 계열회사 합계				⑦	

#### 기재요령

- ①에는 담보를 제공한 회사가 제공한 담보의 내용[예, 부동산, 국채, 00사 발행 사채 등]을 기재한다.
- ②에는 담보를 제공한 회사가 담보제공 잔액을 기재한다.
- ③에는 담보제공 이유[예, B사의 금융기관 대출 등]를 기재한다.
- ④에는 A사의 모든 계열회사에게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 제공 잔액을 기재한다.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⑦에 모든 계열회사의 담보제공 잔액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담보 내역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담보제공 내역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건 수	담보 금액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	⑤	①	②
	합 계	③	④

#### 기재요령

- 타인을 위하여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담보 내역 중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의 현재 존재하는 건 수와 담보 금액을 ①과 ②에 각각 기재한다.
- 대표회사는 ③과 ④에 계열회사 전체의 담보제공 건 수와 금액을 기재한다.
- ⑤에는 공시 대상 회사(공시 주체)의 사명을 기재한다.

## 7 공시절차

- ▣ 공시대상회사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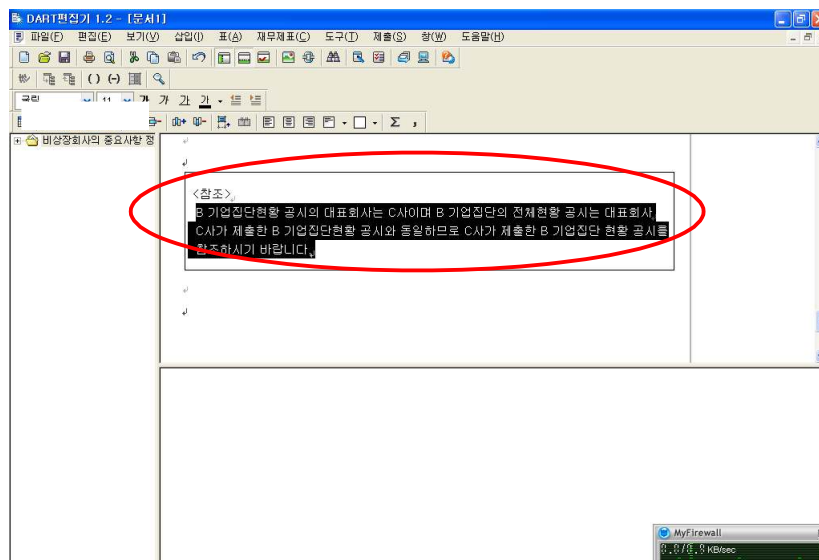
순서	방법
1.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홈페이지(<a href="http://filer.fss.or.kr">http://filer.fss.or.kr</a>) 초기화면에서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등록’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면제</li> <li>-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서류를 팩스로 송부</li> </ul> </li> <li>○ 3일 내에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결과 확인</li> <li>※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사실인증서를 발급/폐기하기 위해 ‘비밀번호변경 코드’가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li> <li>※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등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재발급 신청</li> </ul>
2. S/W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자료실’에서 ‘DART 제출소프트웨어 설치본’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프로그램 설치 후 인터넷을 통하여 최신 업데이트 파일이 추가로 설치됨</li> </ul> </li> </ul>
3. 인증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인증서와 사실인증서 중 한 가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인증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부에서 공인하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은행, 금융투자업자 등)에서 발급</li> <li>② 접수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단의 ‘등록/재등록’을 클릭하여 등록 신청</li> <li>③ 안내에 따라 나머지 과정을 모두 진행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li> </ol> </li> <li>- 사실인증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li> <li>② ‘인증서 관리-사실인증서 발급’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발급이 완료됨</li> </ol> </li> </ul> </li> <li>※ 사실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입력하는 인증서 암호는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되므로 반드시 숙지</li> </ul>

순서	방법
4. 문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윈도우 시작버튼 - 프로그램 - DART 제출소프트웨어 - DART편집기’ 클릭하여 DART편집기 실행</li> <li>① ‘파일-새 문서’메뉴를 클릭 후 서식을 열어 작성</li> <li>② 문서 작성이 끝나면 ‘도구-파일형식 검사’메뉴를 실행하여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li> <li>③ ‘파일-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메뉴를 실행하여 공시용 화면 점검</li> </ul> <p>※ 접수홈페이지 ‘기업공시안내자료’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지침서인 ‘전자문서제출요령’을 다운로드하여 참고</p>
5. 전송파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생성’메뉴 실행</li> <li>② 제출의무자 고유번호 입력하고 업무 및 보고서, 첨부파일 등을 선택</li> <li>③ 전송파일명 및 연락처 입력</li> <li>④ 전자서명 창이 뜨면 위의 순서 ‘[3] 인증서발급 및 등록’에 따라 발급 / 등록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li> <li>⑤ 전송파일(-.DRT)이 생성됨</li> </ul>
6. 전송파일 제출 및 결과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순서 ‘[5] 전송파일 만들기’ 완료 후 바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거나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제출’메뉴를 실행하면 인터넷을 통해 즉시 제출 및 결과 확인이 가능</li> <li>- 또는 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문서제출-신규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전송파일(-.DRT)을 제출하고 ‘제출현황조회-제출결과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접수여부를 확인</li> </ul> <p>※ 첨부서류만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첨부추가 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제출</p> <p>※ 접수시간 : 평일 07:00 ~ 19:00  - 당일접수 : 07:00 ~ 18:00  - 익일접수 : 18:00 이후 ~ 19:00</p>
7. 공시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홈페이지(<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에서 조회</li> </ul>
※ 문의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전화</li> <li>◦ 공시양식 기재방법 등 공시제도 안내(공정위 기업집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번호 : 02-2023-4273~4281</li> </ul> </li> <li>◦ 제출S/W 및 접수·공시홈페이지 사용법 안내(금감원 전자공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2번 → 3번)</li> </ul> </li> </ul> <p>※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홈페이지 ‘기업공시안내자료’의 전자문서제출요령 참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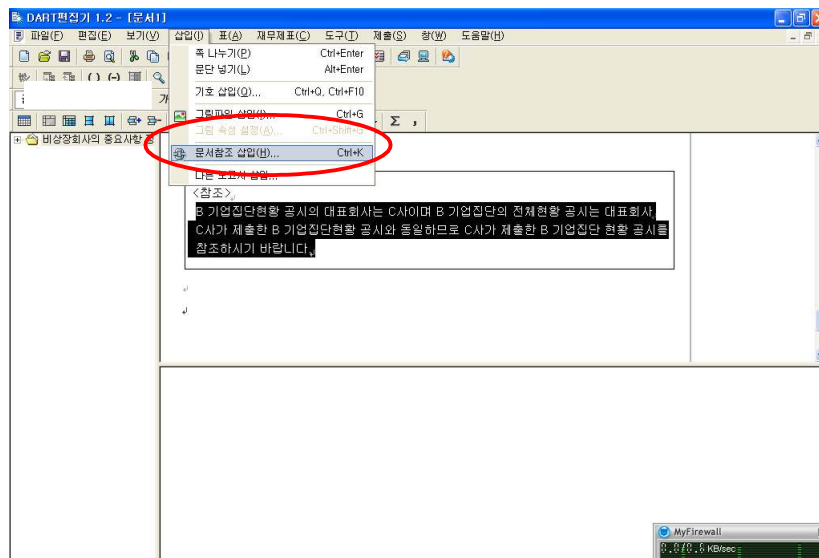
## 참조공시 연결 작업순서

※ DART편집기 상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양식 작성시 양식 첫 장의 참조 박스 내용에 대표회사에서 작성한 공시(기업집단전체현황공시)를 문서참조 삽입 기능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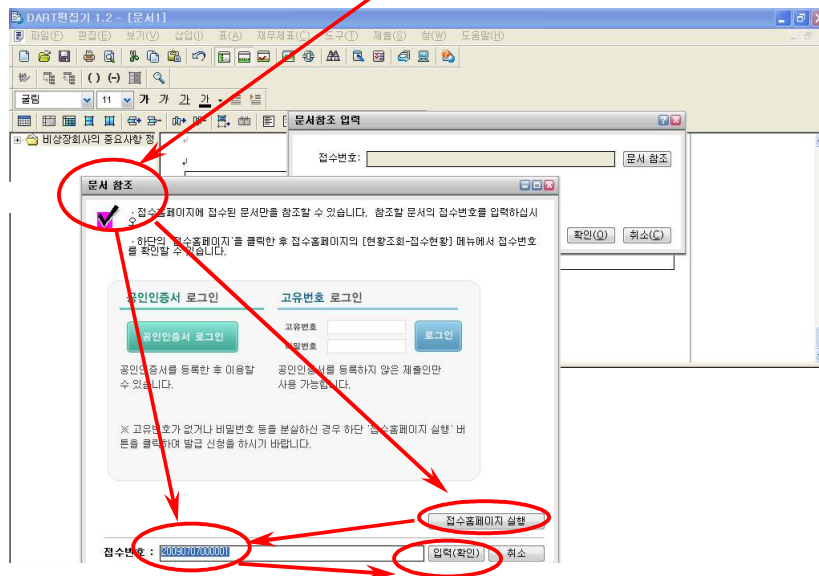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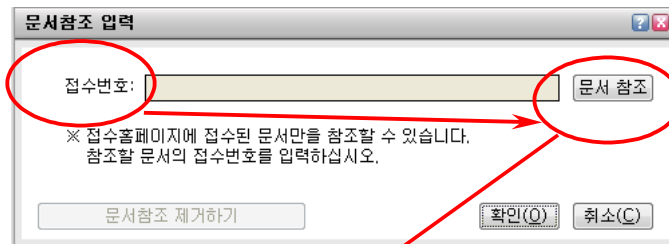
### 1. 참조 박스의 내용 전체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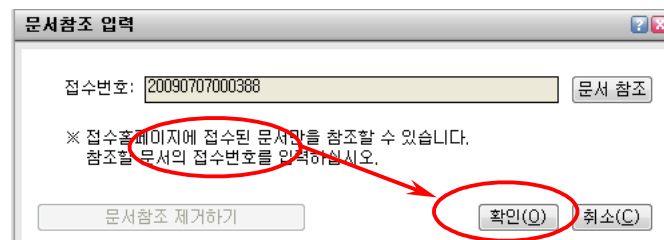
### 2. [삽입] / [문서참조 삽입] 메뉴를 클릭한다.



- [문서참조 입력] 창에서 문서참조버튼을 눌러 [문서참조] 창을 띄운 후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를 실행하여 접수번호를 검색하여 입력하거나 직접 접수번호를 입력한다.



- 접수번호가 입력되면 확인버튼을 눌러 연결을 완료한다.



## 8 수탁기관의 업무

◆ 수탁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며 문서의 수신 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공시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시사항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음

## 9 위반시 제재

◆ 공시대상회사가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시정명령 부과
- 법 제69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 별표3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참고> 시행령 별표 3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1,000
	기한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

## **Ⅱ.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제도**

- 1.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64**
- 2. 주요용어 설명 / 67**
- 3. 적용대상 회사 / 68**
- 4. 수시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 69**
- 5. 공시 유의사항 / 144**
- 6. 공시절차, 수탁기관의 업무 및 위반시 제재 / 145**

## 1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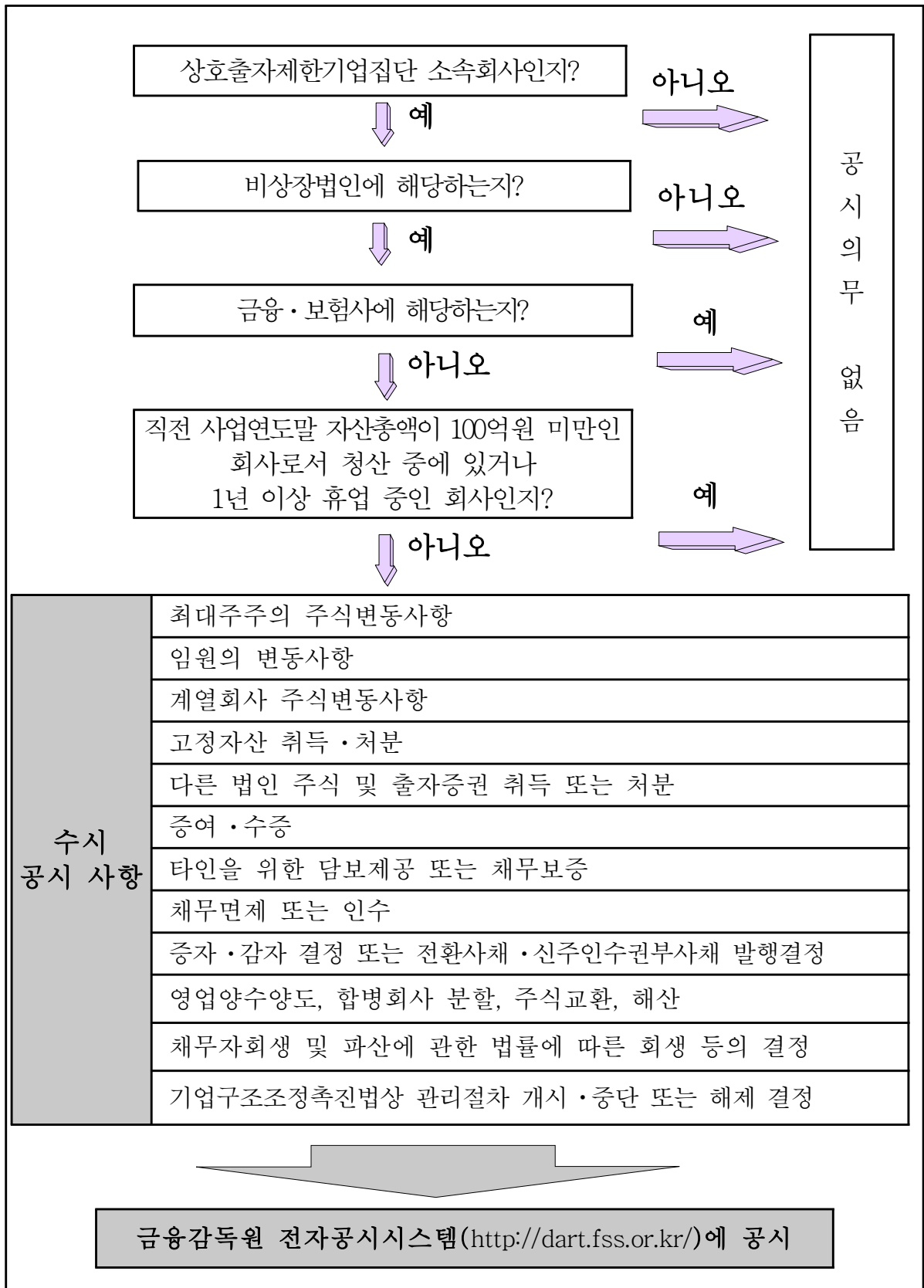
- 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주주고지의무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음
  -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
  -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 독립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기업집단내 다른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음
    -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도입(’05.4.1.)**

### 법적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의 범위, 공시사항 및 공시시기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 관련 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0
  - 공시대상 회사, 공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시시기 등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소유지배구조 관련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임원의 변동현황, 계열회사 주식보유변동현황
- 재무구조 관련 : 고정자산 및 다른 법인주식의 취득·처분, 증여,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증자 또는 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 경영활동 관련 : 영업양도·양수, 임대, 합병, 주식교환 또는 이전, 해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 등

## 〈 비상장회사 공시제도 개관 〉



## 2 주요용어 설명

### 자기자본 산정방법

- ▣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 또는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말함
- 다만, 최근사업연도말 경과후 상법 제522조(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및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실의 효력 발생일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을 말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 ☞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 자산총액, 자기자본 기준의 적용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
- 즉, 2009. 12. 31일 결산(감사보고서)에 따른 자산총액과 자기자본은 2010. 4. 1.부터 2009. 3.31. 까지 발생하는 중요사항 변동에 대하여 공시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

## 새로 설립된 회사의 자산, 자본기준

-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3 적용대상 회사

#### 적용대상 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중 비상장법인
  - 다만, 금융·보험사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함

☑ 금융·보험사는 비상장회사의 공시제도의 적용을 제외

◎ 비상장 금융회사는 관련 금융업법규에 근거하여 공시하고 있음

- 정기공시 : 영업보고서 등

- 수시공시 : 거액손실·금융사고, 적기시정조치 등 당해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금감원은 2003.8.19. 비상장 금융회사의 투명경영을 촉진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장 금융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주요 경영사항을 상장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함

## 연도중 편입·제외된 경우

- 연도 중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공시기한일에 해당사항을 공시
-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타법인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여 최대 출자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열편입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공시 의무 없음
- 연도 중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부터 계열제외된 회사 또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제외 또는 지정제외된 날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 4 수시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 수시공시사항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현황**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사항,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사항
-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결정사항
  - 다른 법인(국내 계열회사를 제외한 국내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또는 처분 결정사항
  - 증여 또는 수증,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 제외) 결정사항

-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결정사항, 증자 또는 감자 결정사항,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결정사항

#### ▣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7조의2(간이합병)·제527조의3(소규모합병)·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따른 결정사항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정사항,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사항
-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결정사항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 결정사항

#### 수시공시사항의 공시기한

#### ▣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 7일 이내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7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
- 기간계산은 사유발생일 익일부터 하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

● 공시사유발생일은 다음을 의미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계열회사 보유주식의 변동이 있을 때
-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
- 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 있을 때

##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 ■ 공시사유발생

- 최대주주(당해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하며,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의 보유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 기준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동일인측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인측 보유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 기준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 사유는 불문하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는 없음
- 최대주주 각각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시하며, 최대주주 전체의 주식수나 지분율의 변동이 없더라도 구성원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시

### ■ 공시요령

- 동일인과의 관계란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 본인,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구분
  - 동일인측이 아닌 최대출자자 : 기타(해외), 기타(국내)로 구분

- 변경된 주주만 공시할 경우 공시이용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시양식에 따라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변경 전·후 지분율 현황을 공시
- 개별 주주별 지분율란에는 주식의 종류별(보통주,우선주) 지분율을 기재
- 소계 및 합계의 보통주, 우선주 지분율란에는 주식의 종류별 지분율을 기재하고 합계 지분율란에는 전체 총 발행 주식수 기준 지분율을 기재
- **공시사유발생일** 즉, 지분 변동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날로 함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그 외의 경우로서 감사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확정되는 날

<작성양식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단위 : 주, %,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	------	-------

주주명	동일인과의 관계	변동내역								취득/처분	
		변동일	주식의 종류 (보통주/우선주)	변동 전		증감		변동 후		금액	단가
				주식수	지분율 (A)	주식수	지분율 (B-C-A)	주식수	지분율 (C)		
자기주식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소계(A)		-	보통주							-	-
			우선주								
			합 계								
동일인측이 아닌 최대출자자 소계(B)		-	보통주							-	-
			우선주								
			합 계								
기타 소계(C)		-	보통주							-	-
			우선주								
			합 계								
전체 합계 (A+B+C)		-	보통주							-	-
			우선주								
			합 계		100		100		100		

## ② 임원의 변동

### ■ 공시사유발생

- 등기부 등본에 임원의 변동사항이 등재된 때(등기일) 공시
- 임원이 중임하는 것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대상임(예 : 이사 → 감사, 이사 → 대표이사)

### ■ 공시요령

- 변경된 임원만 공시할 경우 임원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경우 공시이용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시양식에 따라 전체임원을 대상으로 해임(사임)된 임원과 선임된 임원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 전·후의 임원전체현황을 공시
- 변동이 없는 임원의 경우(중임 포함)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똑같이 임원명을 기재하고 변경후 란의 선임일과 등기일에 **최초선임일과 최초등기일**을 기재
- 해임, 사임, 퇴임된 경우 실제해임일 또는 실제사임일 등을 기재하고 등기일란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을 기재
- 새로 취임, 선임된 경우 선임일란에는 실제취임일 등을 기재하고 등기일란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을 기재

<작성양식 2>

임원의 변동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	------	-------

직위	변경전			변경후			주요경력
	임원명	해임일	등기일	임원명	선임일	등기일	
대표이사	홍길동						전 - 현 -
				김대표			전 - 현 -
이사	박이사						전 - 현 -
	김이사						전 - 현 -
	표이사	-	-	표이사			전 - 현 -
				허이사			전 - 현 -
				정이사			전 - 현 -
감사	강감사						전 - 현 -
	김감사						전 - 현 -
				이감사			전 - 현 -

### ③ 계열사 주식보유 변동

#### ▣ 공시사유발생

- 계열회사 보유주식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감자, 증자 등 변동 사유는 불문함
-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없음. 다만, 보유주식수나 지분율에 변동이 없을지라도 회사가 변동된 경우 공시

#### ▣ 공시요령

- 계열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한정,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취득 등의 경우에는 계열회사 지분변동이 아닌 타법인 지분 취득 등에서 공시
- 변동일에는 주금납입 등 주식변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완료된 날을 기재

<작성양식 3>

### 계열사 주식보유 변동

(단위 : 주, %)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주식보유 계열회사명	변동일	변동 전						변동 후					
		보통주		우선주		계		보통주		우선주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4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취득중인 자산(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이에 대한 결정사항도 공시대상임 (\*재고자산은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취득 포함

##### ■ 공시요령

- 취득가액에는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단일 취득 결정 금액을 기재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취득방법은 직접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사모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비유동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4>

###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취득 목적물				
2. 취득 목적물 규모				
3. 취득가액 (원)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원)				
- 자산총액 대비 (%)				
4. 거래상대방				
- 회사와의 관계				
5. 취득목적				
6. 취득예정일				
7. 주요계약조건				
8. 자본조달방법				
9. 취득방법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5 비유동자산 처분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등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 공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처분 포함

### ■ 공시요령

- 처분가액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단일 처분 결정 금액을 기재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척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처분방법은 직접보유자산의 처분, 신탁계약을 통한 보유자산의 처분, 사모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보유자산의 처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비유동자산처분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5>

### 비유동자산 처분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처분 목적물				
2. 처분 목적물 규모				
3. 처분가액(원)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원)				
- 자산총액 대비 (%)				
4. 처분대상 비유동자산의 장부가액(원)				
- 자산총액 대비 (%)				
5. 거래상대방				
- 회사와의 관계				
6. 처분목적				
7. 처분예정일				
8. 처분방법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⑥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계열회사 제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등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 공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계약(당해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간접투자기구(당해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취득을 포함

### ■ 공시요령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취득금액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단일 취득 결정 금액을 기재
- 대규모법인여부 기재 시 취득 대상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발행회사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2조원(코스닥 상장 법인인 경우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으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는 ‘미해당’으로 기재
- 취득방법은 현금취득, 전환사채 전환권행사에 의한 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사모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등 해당취득방법을 기재
-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타 법인출자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6>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	------	-------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대표이사	
		자본금 (원)		회사와의 관계	
		발행주식총수(주)		주요사업	
2. 취득내역	취득 주식수 (주)				
	취득금액 (원)				
	자기자본 (원)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 (주)			
		지분비율 (%)			
4. 취득방법					
5. 취득목적					
6. 취득예정일자					
7.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 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 7]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등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 공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계약(당해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간접투자기구(당해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처분을 포함

### ■ 공시요령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처분금액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단일 처분 결정 금액을 기재
- 대규모법인여부 기재 시 처분 대상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발행회사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2조원(코스닥 상장 법인인 경우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으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는 '미해당'으로 기재
-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타 법인출자지분처분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7>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	------	-------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대표이사	
		자본금 (원)		회사와 <sup>인</sup> 관계	
		발행주식총수(주)		주요사업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 (주)				
	처분금액 (원)				
	자기자본 (원)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 비율		소유주식수 (주)			
		지분비율 (%)			
4. 처분목적					
5. 처분예정일자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⑧ 증여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의 증여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증여목적물은 금전, 부동산(임야), 동산(회원권), 유가증권, 기타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증여되는 재산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
-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
- 신고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증여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증여가액은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함

<작성양식 8>

증여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	------	-------

1. 수증인(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2. 증여목적물			
3. 증여가액 (원)			
- 자기자본 (원)			
- 자기자본 대비 (%)			
4. 결정일(이사회결의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증여상대방별 내역】

수증인(상대방)	관계	증여일	증여금액(원)	증여목적물	당해 사업년도 총증여금액(원)

## 9] 수증

### ■ 공시사유발생

-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의 증여를 받기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이 결정한 때 공시

### ■ 공시요령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수증목적물은 금전, 부동산(임야), 동산(회원권), 유가증권, 기타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수증받는 재산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
-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수증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9>

## 수 증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	------	-------

1. 증여인		(회사와의 관계)	
2. 수증목적물			
3. 수증가액 (원)			
- 자기자본 (원)			
- 자기자본 대비 (%)			
4. 수증일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수증상대방별 내역】**

증여인	관계	수증일	수증금액(원)	수증목적물	당해 사업년도총 수증금액(원)

## 10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결정이 있을 때 공시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 공시요령

- 채무자는 담보제공에 대한 수익자를,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 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하며, 채권자는 금융기관 등 담보설정권자를 기재
- 대규모법인여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이상,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을 기준으로 함
- 담보제공 총 잔액은 결정일 현재 타인을 위한 담보설정 총 잔액을 기재
-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0>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	------	-------

1. 채무자			
- 회사와의 관계			
2. 채권자			
3. 채무(차입)금액 (원)			
4. 담보제공 내역	담보설정금액 (원)		
	자기자본 (원)		
	자기자본 대비 (%)		
	대규모법인 여부		
	담보제공재산		
	담보제공기간	시작일	
종료일			
5. 담보제공 총 잔액 (원)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채무자별 담보제공 잔액】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잔액(원)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재산	비 고

## 11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보증(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는 제외

### ■ 공시요령

- 채무자는 담보제공에 대한 수익자를,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 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하며, 채권자는 금융기관 등 담보설정권자를 기재
- 대규모법인여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이상,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을 기준으로 함
- 채무보증 총 잔액은 결정일 현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총 잔액을 기재
-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1>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	------	-------

1. 채무자			
- 회사와의 관계			
2. 채권자			
3. 채무(차입)금액 (원)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금액 (원)		
	자기자본 (원)		
	자기자본 대비 (%)		
	대규모법인 여부		
	채무 보증기간	시작일	
종료일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채무보증기간	비 고

## 12 타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채무의 내용은 면제채무의 상환일, 상환조건, 면제채무의 금리 조건 기타 면제채무의 특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는 당해 채무면제가 당해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
-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2>

타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채무자				(회사와의 관계)			
2. 채무면제내역	채무의 내용						
	면제금액 (원)						
	- 자기자본 (원)						
	- 자기자본 대비(%)						
	면제사유						
	면제(예정)일						
3. 회사에 미치는 영향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13 채무인수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채무의 내용은 인수채무의 상환일, 상환조건, 인수채무의 금리 조건 기타 인수채무의 특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채무인수로 인한 영향에는 채무인수가 당해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
-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3>

채무인수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원채무자				(회사와의 관계)			
2. 채권자				(회사와의 관계)			
3. 채무인수내역	채무의 내용						
	인수금액 (원)						
	- 자기자본 (원)						
	- 자기자본 대비(%)						
	인수사유						
	인수(예정)일						
4. 채무인수로 인한 영향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14 타인에 의한 당사의 채무면제

### ■ 공시사유발생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채무의 내용은 면제채무의 상환일, 상환조건, 면제채무의 금리 조건 기타 면제채무의 특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는 당해 채무면제가 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당사의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4>

타인에 의한 당사의 채무면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채권자				(회사와의 관계)			
2. 채무면제내역	채무의 내용						
	면제금액 (원)						
	- 자기자본 (원)						
	- 자기자본 대비(%)						
	면제사유						
	면제일						
3. 채무면제 확인일							
4. 회사에 미치는 영향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15 유상증자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
- 증자방식에는 주주배정증자, 주주우선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
- 신주발행가액은 신고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방법 및 확정예정일 등을 기재
-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재  $\Rightarrow \{(\text{주당 발행가} - \text{주당 액면가}) / \text{주당 액면가}\} \times 100$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의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에는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비고란에는 구체적인 관계를 별도로 기재  
(예시)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최대주주인 (주)ABC의 임원등
-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 신주권교부예정일, 단주처리방법,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 배당기산일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5>

유상증자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우선주 (주)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				

※ 증자방식에 따라 아래 양식 4종

<작성양식 15>

유상증자 결정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종료일	
	구주주	시작일	
		종료일	
12. 납입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15. 신주권 교부예정일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작성양식 15>

유상증자 결정

<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종료일	
	구주주	시작일	
		종료일	
	일반공모	시작일	
		종료일	
12. 납입일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작성양식 15>

유상증자 결정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9.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종료일	
	일반공모	시작일	
		종료일	
10. 납입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작성양식 15>

유상증자 결정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9. 납입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3.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신주배정주식수(주)	비 고

## 16 무상증자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무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는 무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소유주식 1주당 무상으로 배정할 신주의 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 신주권교부예정일, 단주처리방법,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 배당기산일, 신주의 재원(주식발행초과금, 재평가적립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기타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재무개선적립금 및 기타 해당 계정과목의 재원금액별로 구분)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6>

### 무상증자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4. 신주배정기준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6. 신주의 배당기산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7 유무상증자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유무상증자(동시발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
- 증자방식에는 주주배정증자, 주주우선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
- 신주발행가액은 신고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방법 및 확정예정일 등을 기재
-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재 ⇒  $\{(주당\ 발행가 - 주당\ 액면가) / 주당\ 액면가\} \times 100$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의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에는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비고란에는 구체적인 관계를 별도로 기재  
(예시)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최대주주인 (주)ABC의 임원등

-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 신주권교부예정일, 실권주처리계획, 배당기산일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7>

### 유무상증자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	------	-------

#### I.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우선주 (주)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		

※ 증자방식에 따라 아래 양식 4종

<작성양식 17>

유무상증자 결정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종료일	
	구주주	시작일	
		종료일	
12. 납입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작성양식 17>

유무상증자 결정

<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종료일	
	구주주	시작일	
		종료일	
	일반공모	시작일	
		종료일	
12. 납입일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작성양식 17>

유무상증자 결정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9.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종료일	
	일반공모	시작일	
		종료일	
10. 납입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작성양식 17>

유무상증자 결정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9. 납입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3.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신주배정주식수(주)	비 고

<작성양식 17>

## 유무상증자 결정

### II.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4. 신주배정기준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 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6. 신주의 배당기산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8 감자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감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감자비율(%)은 주식의 종류별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기재하되, 주주별로 차등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주주별 차등감자 비율을 각각 기재
- 감자방법은 주식병합, 주식액면가액의 감액, 주식소각 등의 해당방법을 기재하고,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감자주식의 매수방법 및 1주당 매수가격 등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채권자보호절차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8>

감자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주)			
	우선주(주)			
5. 감자비율	보통주 (%)			
	우선주 (%)			
6. 감자기준일				
7. 감자방법				
8. 감자사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9 전환사채 발행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국내 또는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사채의 종류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
- 기준환율에는 신고일 현재의 기준 또는 조정환율을 기재
-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 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당해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사채발행방법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
- 전환가액은 전환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전환가액 산정 방법, 확정예정일 및 향후 전환가액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Call Option, Put Option, 전환가액조정방법, 전환예정 주식수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해외발행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의2 제2항 각목의 조치 중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당해 전환사채 및 그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1년 내에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을 기재
- 해외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기재
-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당해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이를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9>

전환사채 발행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기준환율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5. 사채만기일							
6. 이자지급방법							
7. 원금상환방법							
8. 사채발행방법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전환가액 (원/주)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10. 청약일							
11. 납입일							
12. 대표주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사유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 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 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20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국내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사채의 종류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
- 기준환율에는 신고일 현재의 기준 또는 조정환율을 기재
-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당해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사채발행방법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
- 행사가액은 행사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행사가액 산정방법, 확정예정일 및 향후 행사가액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신주대금 납입방법은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으로 구분하여 기재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Call Option, Put Option, 행사가액조정 방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해외발행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의2 제2항 각목의 조치 중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당해 신주 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및 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1년내에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을 기재
- 해외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기재
-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당해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이를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0>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기준환율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5. 사채만기일				
6. 이자지급방법				
7. 원금상환방법				
8. 사채발행방법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행사가액 (원/주)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신주대금 납입방법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10. 청약일				
11. 납입일				
12. 대표주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 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 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21] 영업양도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영업양도 영향은 영업의 양도에 따라 영업, 자산, 매출액 등 경영상의 주요변화가 예상되는 사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기재
-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1>

### 영업양도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양도영업				
2. 양도영업 주요내용				
3. 양도가액 (원)				
4. 양도목적				
5. 양도예정일자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7. 영업양도 영향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9. 주주총회 예정일자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1. 양도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액			
	매출액			
	부채액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㉓ 영업양수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영업양수 영향은 영업의 양수에 따라 영업, 자산, 매출액 등 경영상의 주요변화가 예상되는 사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기재
-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2>

영업양수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	------	-------

1. 양수영업							
2. 양수영업 주요내용							
3. 양수가액 (원)							
4. 양수목적							
5. 양수예정일자							
6. 양도법인내역	회사명						
	자본금 (원)						
	주요사업						
	본점소재지						
	관계						
7. 영업양수 영향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9. 주주총회 예정일자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 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1.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액			당사대비(%)			
	매출액			당사대비(%)			
	부채액			당사대비(%)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3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임대 등 유형은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체결의 해당 사항을 기재
- 임대 등 영향은 임대 등에 따라 영업, 자산, 매출액 등 경영상의 주요변화가 예상되는 사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기재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3>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임대 등 유형				
2. 임대 등 영업 주요내용				
3. 임대 등 목적(이유)				
4. 임대 등 예정일자				
5. 임대 등 영향				
6. 임대 등 상대방인 내역	회사명			
	자본금 (원)			
	주요사업			
	본점소재지			
	회사와의 관계			
7. 주주총회 예정일자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4 영업전부의 임대 · 경영위임 등의 계약 변경 · 해지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유형에는 영업전부의 임대계약의 변경, 영업전부의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전부에 대한 경영위임계약의 변경, 영업전부에 대한 경영위임계약의 해지,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계약 변경·해지에 따른 영향은 영업, 자산, 매출액 등 경영상의 주요변화가 예상되는 사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기재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주식매수가격 산출방법 및 예정산출가액 등 주요사항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4>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의 계약 변경·해지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유형				
2. 계약 변경·해지의 주요내용				
3. 계약 변경·해지의 목적(이유)				
4. 계약 변경·해지 예정일자				
5. 계약 변경·해지에 따른 영향				
6. 계약 변경·해지의 상대방(회사와의 관계)				
7. 주주총회 예정일자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㉔ 회사합병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합병방법은 A사가 B사를 흡수합병, A사와 B사의 신설합병 등 해당 방법을 기재
- 합병비율은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존속회사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정일자 등 관련 없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간이 또는 소규모합병임을 기재
-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5>

회사합병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합병방법					
2. 합병목적					
3. 합병비율					
4. 합병비율 산출근거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			
		우선주			
6. 합병 상대회사	회사명				
	주요사업				
	회사와의 관계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계		자본금
			부채총계		매출액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7. 신설 합병회사	회사명				
	자본금 (원)				
	주요사업				
	재상장 여부				
8. 합병일정	주주총회에정일자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정지에 정기간	시작일			
		종료일			
	채권자 이의 제 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합병기일					
합병등기에정일자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6 회사분할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분할방법은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 등 해당사항을 기재
- 분할비율은 존속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감자비율은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6>

회사분할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분할방법							
2. 분할목적							
3. 분할비율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자본금 (원)						
	주요사업						
6.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자본금 (원)						
	주요사업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8. 주주총회 예정일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10. 분할기일							
11. 분할등기 예정일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7 회사분할합병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공시요령

- 분할합병방법은 00사업부문을 분할하고, 00회사의 00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분할합병, 00사업부문을 분할하여 00회사에 흡수분할합병 등 해당방법을 기재
- 분할합병비율은 분할전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할 분할합병후 존속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하되, 신설합병의 경우 분할전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할 분할합병후 신설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감자비율은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
-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7>

회사분할합병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분할합병 방법					
2. 분할합병 목적					
3. 분할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나.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자본금 (원)				
	주요사업				
다.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자본금 (원)				
	주요사업				
라.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4. 합병에 관한 사항					
가. 합병상대 회사	회사명				
	주요사업				
	회사와의 관계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계		자본금	
		부채총계		매출액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나.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우선주				
다. 합병신설 회사	회사명				
	자본금 (원)				
	주요사업				
5. 분할합병비율					
6. 분할합병기일					
7.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9. 주주총회 예정일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8 주식교환 · 이전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

### ■ 공시요령

- 구분에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해당사항을 기재
- 교환·이전 비율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1주당 발행·교부되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8>

### 주식교환 · 이전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구분					
2. 교환·이전 대상법인	가. 회사명				
	나. 대표자				
	다. 주요사업				
	라.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			
		우선주			
마.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3. 교환·이전 비율					
4. 교환·이전 목적					
5. 교환·이전 일정	주주총회 예정일자				
	구 주권제출기간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교환·이전일자				
6. 교환·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9 해산사유 발생

### 공시사유발생

-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외국법인등의 경우 해당국의 관련법률)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이를 해산사유신고에 갈음할 수 있음

### 공시요령

-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판결, 해산결의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해산사유발생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9>

### 해산사유 발생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해산사유				
2. 해산내용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0 회생절차 개시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외국법인 등의 경우 기업 회생과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 공시

#### ■ 공시요령

-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혈족6촌, 인척4촌이내),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족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상기사항 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향후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0>

### 회생절차 개시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결정일자				
2. 관할법원				
3. 결정 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종료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4.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1 회생절차 종결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외국법인 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가 종결된 때를 포함) 공시

#### ■ 공시요령

- 상기사항 외의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의 향후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1>

### 회생절차 종결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결정일자				
2. 관할법원				
3. 결정내용 및 사유				
4.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5. 향후일정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32 회생절차 폐지결정

#### ■ 공시사유발생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제8장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외국 법인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가 폐지된 때를 포함) 공시

#### ■ 공시요령

- 상기사항 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향후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2>

#### 회생절차 폐지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결정일자				
2. 관할법원				
3. 결정내용 및 사유				
4.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5. 향후일정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33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 공시사유발생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에 의한 관리절차개시의 결정사실을 확인한 때(외국법인등의 경우 채권은행등의 관리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 공시

#### ■ 공시요령

- 관리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 중 해당기관명을 기재
- 상기사항 외의 채권은행 등에 의한 관리절차개시와 관련한 회사의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3>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 관리기관				
3. 관리기간				
4. 관리사유				
5. 관리범위 및 내용				
6. 확인일자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 ■ 공시사유발생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에 의한 관리절차의 중단 결정사실을 확인한 때(외국법인등의 경우 채권은행등의 관리와 유사한 절차가 중단된 때를 포함) 공시

#### ■ 공시요령

- 관리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 중 해당기관명을 기재
- 상기사항 외의 채권은행 등에 의한 관리절차중단과 관련한 회사의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4>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관리절차중단 결정일자				
2. 관리기관				
3. 관리기간				
4. 관리절차 중단사유				
5. 확인일자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35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

#### ▣ 공시사유발생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에 의한 관리절차해제의 결정사실을 확인한 때(외국법인등의 경우 채권은행등의 관리와 유사한 절차가 해제된 때를 포함) 공시

#### ▣ 공시요령

- 관리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 중 해당기관명을 기재
- 상기사항 외의 채권은행 등에 의한 관리절차해제와 관련한 회사의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5>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관리절차해제 결정일자				
2. 관리기관				
3. 관리기간				
4. 관리절차 해제사유				
5. 확인일자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5 공시유의사항

### 공시양식

- 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의 공시양식은 현재 증권거래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고 있는 양식을 준용
  - 공시양식 작성시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증권거래법령상의 공시양식 작성시 유의사항과 동일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에 관한 공시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증권거래법령상의 관련규정 해석과 다를 수 있음
  - 예)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변동에서 “최대주주는 공정거래법령상의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증권거래법령상의 “최대주주 개념과 다름

###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상의 공시가 중복되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

## 6 공시절차, 수탁기관의 업무, 위반시 제재

---

-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와 동일

## 〈 참고 자료 〉

1. 관련 공정거래법령 규정 / 157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166
3. 과태료 규정 / 176
4. 질의응답 모음(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 182
5. 질의응답 모음(비상장회사 수시공시) / 190

# # 1. 관련 공정거래법령 규정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관련>

### ◎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등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 생략)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중간생략)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 7. (생략)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범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③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 8. (생략)

②·③ (생략)

#### ◎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의11 등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출자현황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한 현황
-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 1회 또는 연 2회 공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1,000
	기한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

##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관련>

### ◎ 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등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 생략)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제11조의4(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중간생략)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 7. (생략)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범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③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 8. (생략)

②·③ (생략)

### ◎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의10 등

제17조의10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법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9.5.13>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③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13, 2008.7.29>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

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減資)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④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06.4.14, 2007.7.13>

1.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삭제 <2006.4.14>
6.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금

액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그 계열 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3>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2008.7.29>

[본조신설 2005.3.31]

[별표 3]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1,000
	기한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

##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 2009.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3항 및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공시)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3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7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이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의11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대상 회사(이하 “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라 한다)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라 함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히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제

외한 회사(이 조에서 “개별회사라 함)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4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표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현황
3.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 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해외 계열회사 현황

마. 계열회사의 변동내역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유현황
      -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 다.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 가.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현황
      -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동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 마.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 바.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 대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실제 거래내역을,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0제4항제7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 사.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 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 자.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 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 카.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 ② 제1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 다만,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년도 지정일부터 금년도 지정일 전일까지의 계열회사 변동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이 속한 당해년도 4월 30일 현재 기준
  3. 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이 속한 당해년도 4월 1일 현재 기준
  4. 제1항제3호 다목 및 제1항제4호 :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현재 기준[공시사항이 유량(流量)인 경우에는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마목·바목·자목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는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 제4조(공시의무사항)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 및 제4호 마목·바목·자목
  2. 분기별 공시사항 : 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제4호(마목·바목·자목은 제외한다)
- ② 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

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① 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다. 국내 계열회사의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국내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가.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7조의2(간이합병)·제527조의3(소규모합병)·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해산사유
  -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사항
  - 마.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을 때라 함은 이사회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
-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 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공시대상회사는 자기가 작성·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시대상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양식으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

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2009. 7. 8.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호)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호)을 적용한다.

## # 3. 과태료 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안)

제정 2010.9.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안)

#### I.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 라. 허위로 공시한 자

### III. 용어의 정의

####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법 제11조의4(기업 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관련금액이나 관련지분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며, 위반행위 관련금액이 자산총액기준 10% 이상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별 관련 지분율 10%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면하는 금액을 말한다.

####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 IV.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 1. 과태료의 면제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통신망의 두절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경 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할 수 있다.

-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 나. 경미한 위반인 경우
  -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 전산상 오류 또는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 V. 과태료 산정기준

###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 1)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가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

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동 사항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공시된 경우 기한을 넘겨 공시한 경우로 간주하여 기본금액을 산정한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1,000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위 공시			1,000

## 2. 기준금액

위반행위 관련금액이 자산총액기준 10% 미만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에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관련금액(자산총액기준), 지분율	적용비율(%)
10% 이상	100
8% ~ 10% 미만	90
6% ~ 8% 미만	80

4% ~ 6% 미만	70
2% ~ 4% 미만	60
2% 미만	50

### 3. 임의적 조정금액

####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면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면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면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면비율의 합계

####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 (1)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는 별도 적용
- (2)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가중

#### 다. 감면 조정 사유 및 비율

- (1)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및 계열회사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 감면

- (2)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 감면. 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는 별도적용
- (3)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공시해야할 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자동 연장된 경우 30% 감면
- (4)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면
  -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 20% 이내
  -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 40% 이내
  -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 50% 이내
  - 자본금의 잠식이 50% 이상인 경우 : 70% 이내
  -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완전 자본 잠식 등의 경우 : 면제

####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부 칙<2010. 9.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 # 4. 질의응답 모음(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 공 통

#### 1. 참조공시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 ☞ ‘참조공시’란 개별 회사가 자기회사 관련내용만을 공시하고, 소속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은 별도로 공시하는 대신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참조할 것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함

참조공시를 하는 경우, 개별회사 공시정보 이용자가 별도의 검색절차 없이 직접 기업집단현황 공시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다만,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먼저 전자문서(기업집단현황 공시 양식)를 DART 시스템에 접수시켜야 개별회사의 참조공시 링크가 가능하므로 공시기한일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

#### 2. 동일인 관련자 중 상업사용인 및 피용인은 무엇을 의미하며, 상업사용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는 무슨 범주에 포함시켜 공시하나?

- ☞ 상업사용인 또는 피용인이란 자연인인 동일인과 묵시적 합의, 고용계약 등을 통해 동일인을 보좌하거나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개인(지배인 등)을 의미하고, 임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공시

### 3. 공시주체에 해외계열사가 포함되나?

☞ 포함되지 않음

참고로, 해외계열사는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공시양식에서는 계열사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타 합계에 포함시켜 기재

### 4.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있는 경우 지주회사나 자회사는 이들 내용도 같이 공시하나?

☞ 개별회사는 자기회사 내용만 공시하면 되고, 전체 기업집단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공시

## 일반현황

< 작성양식 2, 3 >

### 5. 기업집단현황 공시사항 중 재무현황, 손익현황 등을 기재하는 경우 재무재표상 수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재무제표는 어떤 재무제표를 의미하나?

☞ 개별 재무제표를 의미함. 따라서, 일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개별 재무제표상 수치를 기재

## 주식소유

< 작성양식 10 >

6. 12월말 기준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을 2월말까지 공시해야 하나, 2월말에는 12월말 기준 결산이 미확정되는데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

☞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공시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표시

##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① 공통(작성양식 11~21)

7. 친족이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친족 및 친족측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은 공시할 필요가 없나?

☞ 분리된 친족 및 그 친족측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들과의 거래내역은 공시할 필요 없음. 다만, 공시기준 기간 중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되기 전까지 거래내역 등을 공시

8.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내역도 포함해서 공시하나?

☞ 자금차입현황과 상품·용역 거래현황의 경우 기타 합계에 포함하여 공시

9.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과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현황 공시시 동일인과의 거래현황이 일부 중복되나 해당 공시양식에 따라 공시하면 됨

## 2] 자금(작성양식 11·12)

10. 외화 관련 거래발생시 외화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환율을 적용해도 되나?

☞ 회사에서 별도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율 적용 가능

11. 금융보험사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을 위한 금융거래에서 파생되어 발생하는 대여금(증권사의 신용공여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대여금현황에 포함시켜야 하나?

☞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자금차입·대여현황은 특수관계인과의 순수한 재무적 성격의 자금차입약정에 따른 자금대차거래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금융거래에 부수된 대여금은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자금대차거래로 보지 않음  
예를 들어 증권사가 개인의 주식취득시 제공하는 일시적인 신용공여나 카드사가 익월에 결제될 개인의 카드사용금액을 고객을 대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고객의 주식거래, 카드사용에 따른 부수적 거래이며 추후 납입될 대출채권형식을 가지므로 자금대여로 보기 곤란

12. 합병후 피합병회사로부터 차입금, 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 이들 금액도 차입현황, 유가증권거래현황에 포함하나?

☞ 피합병회사가 공시대상기간(직전분기) 동안 차입한 금액, 발행한 사채금액 등은 포함하여 기재하고, 공시대상기간 이전에 차입한 금액, 발행한 사채금액은 기재할 필요 없음

### ③ 유가증권(작성양식 13·14)

13. 계열 증권사가 판매하는 MMF 상품에 가입한 경우, MMF 상품의 기초자산에 계열사 회사채, CP 등이 편입되어 있으면 유가증권거래현황에 포함시켜 공시하나?

☞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현황은 매도회사가 공시하므로 MMF 가입(매입)회사는 공시의무가 없음

14. 등기임원의 스톡옵션 행사시 어느 양식에 공시하나?

☞ 등기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현황에 포함시켜 공시

15. 차량, 주택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국공채에 대한 채권할인(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할인료만 지급하면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거래금액을 유가증권거래현황에 포함시켜야 하나?

☞ 국공채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하는 경우는 공시해야 함. 다만, 이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할인받아 즉시 매도하는 경우는 기재할 필요 없음

16. 12월31일에 주식매매거래가 발생했으나, 다음해 1월2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공시기준일이 언제인가?

☞ 기업회계기준상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주식매매거래일인 12월31일 기준으로 공시

17.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유상증자한 회사가 계열 회사간 유가증권거래현황 공시 해야하는 지?

☞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가 아니라 유상증사를 실시한 회사가 공시

18. 금융회사의 각종 금융상품 등의 거래를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포함시키는 기준이 있는지?

☞ 금융당국이 분류하는 기준과 금융회사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공시

#### ④ 상품용역(작성양식 15·16)

19. 계열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공시의무는?

☞ 보험 가입회사는 공시의무가 없고, 보험회사는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보험료 수익 등을 기재

#### ⑤ 채무보증, 담보제공 등(작성양식 19~21)

20. 모회사가 자회사의 건설이행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하는 경우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지?

- ☞ 공정거래법 2조의 9호 여신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항목에 공시해야함. 단, 해외건설 시 공사이행보증은 동법 시행령 17조의 5 예외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항목에 공시해야함

## # 5. 질의응답 모음(비상장사수시공시)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사항 <작성양식 1>

1. 당사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기업으로서 당사 주주의 지분구성이 [국내 A법인 50%, 국외 B법인 46%, 국외 C법인 4%]에서 [국내 A법인 50.1%, 국외 B법인 49.9%]로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여부는?

☞ 본건은 최대주주인 A사의 주식보유 비율이 0.1% 변동되었으므로 공시의무가 없음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어야 공시의무가 있음

2. 최대주주 주식보유변동 공시에서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은 어떻게 하는지?

☞ 비상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최대주주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공시양식에는 자사주로 표시하여 기재

3. 증자 또는 감자, 주식액면분할 등을 통하여 주식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최대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공시대상인지?

☞ 공시규정에서 ".....보유주식 비율이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주식 비율(지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공시대상이 아님

4. 추가적인 주식매입이나 매각이 없이 증자 또는 주식소각 등으로 인하여 보유지분이 1%이상 변동이 생기는 경우 공시하여야 하는지?

☞ 어떤 사유에서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예는 공시대상임

5. 등기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공시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그 계열사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1%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보유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최대주주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 및 자기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적시

6. 최대주주 보유주식변동 공시와 관련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 동 공시사항은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구성에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므로 "발행주식 총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포함됨

7. 최대주주의 총 지분율은 변동이 없으나 최대주주간에 아래와 같이 지분 이동이 있을 경우 공시의무가 있는지?

예) 최대주주 지분보유현황 : 계열사 A 10%, 계열사 B 10%, 동일인 20%) ⇒ 계열사 A가 보유한 지분 10%를 계열사 B에 매각하여 계열사 B가 20%를 보유

☞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총 지분율(40%)은 변동이 없으나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으므로 동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최대주주 전체의 지분율 합계에 변동이 없을지라도 최대주주 구성원이 변동되거나, 최대주주 구성원간 지분율이 1%이상 변동시에도 공시대상임

8. 총 자본금의 0.01% 주식을 유상매수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지?

☞ 매수하는 주식이 자기주식/계열회사/타법인 주식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사항이 달라짐

(1) 자기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할때는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

(2) 계열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할때는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 공시

(3) 타법인 주식을 자기자본의 5%이상 매수할 때에는 '타법인의 주식 취득' 공시

## 임원의 변동

<작성양식 2>

9. 공시대상 중 임원의 변동과 관련하여 공시기준은 임원의 선임 및 해임시 공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임원의 변동없이 중임(연임)하는 경우에도 공시하여야 하는지?

☞ 중임(연임)하는 경우 임원의 변동이 아니므로 공시대상이 아님

10. 임원변동의 공시양식을 보면 변경 전 란에 “해임일(등기일)”과 변경 후 란에 “선임일(등기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 변동이 없는 임원의 경우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똑같이 임원명을 기재하고 변경 후 란의 선임일과 등기일을 기재하면 됨

## 계열회사 주식보유변동

<작성양식 3>

11. 계열회사 주식보유변동 공시에서 계열회사이면서도 해외법인인 경우(예, 중국현지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계열회사 주식보유변동”에서 “계열회사”는 국내법인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회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매월 변동현황 공개)만 해당되고 해외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의 공시대상이 아님

12. A사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B)(외국인이 51% 소유)의 주요주주가 변경될 경우 A사는 공시의무가 있는지? B사는 당연히 공시의무가 있을 것인데 A사도 공시의무가 있는지 궁금함

☞ 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지분이 100분의1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A사는 “계열회사(B사)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B사도 “최대주주(A사)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13. A사의 최대주주 갑이 계열회사인 A와 B, 계열회사가 아닌 C사의 주식을 「A사 (20%), B사(20%), C사(10%)」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 갑이 보유한 주식에 변동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A사의 주식 10% 매각, C사 주식 5% 매입] 동 사항 공시해야 하는지?

☞ 본건은 A사의 최대주주인 갑이 10%의 지분을 매각하였으므로 A사는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갑이 계열회사가 아닌 C사의 주식 5%를 매입한 것은 공시대상이 아님

\* 단, 갑이 비상장사이고 C사 주식이 갑의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 갑은 타법인 주식취득공시를 하여야 함

14. “국내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에서

- ① 지분율 1% 이상의 변동을 말하는지?
- ② 계열회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지분율이 변할 경우 공시대상인지?
- ③ 증자나 감자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지분율의 변화가 있으면  
공시대상인지?
- ④ 지분율의 변화 없이 증자나 감자에 참여할 경우 공시대상 여부?

☞ ①과 관련하여 공시양식에서 주식 수 밑에 지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과  
“지분율 1%”는 동일한 개념임

☞ ②, ③과 관련하여 주식매매, 감자, 증자 등에서 변동사유는  
불문하고 계열회사의 보유주식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대상임

☞ ④와 관련하여 액면분할, 증자, 감자 등 주식수가 변경이 생기더라도  
지분율에 변동이 없을 경우는 공시대상이 아님

15. A사(비상장사)와 B사(비상장사)가 합병, B사가 소멸되는 경우  
A사와 B사가 동시에 보유하던 혹은 B사가 보유하던 C사  
주식과 관련하여 공시대상은?(A, B, C는 계열회사)

☞ A사와 B사 모두 합병결정공시, 합병후 A사는 계열회사 주식  
보유변동 공시

(단, B사는 계열제외일로부터 공시의무없음)

16.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공시와 관련하여 보유주식 총수에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 주식보유변동현황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포함됨

- \* 공시양식 작성시 주식의 종류별로 별도의 칸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공시양식참조)

### 비유동자산 취득, 처분 <작성양식 4~5>

17. 중요공시사항 중에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을 공시하기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정이 있을 때라 함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를 말함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도 포함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참고

18.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건설공사비도 비유동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공시대상인지?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은 공시대상임  
따라서 취득중인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이에 대한 결정사항도 공시대상임

19. 비유동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단일 건의 기준은?

☞ 단일 건이란 계약 건(이사회결정 건)으로 보아야 할 것임  
동일인물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각의 자산별로 계약(이사회 결정)을 한다면 각각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공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는 공시관련 법규정 위반에 해당됨

20. 건설중인 공사비로 몇 년간 매월 지급되는 비용이 결산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공시기준일은?

☞ 취득에 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권한 있는 자의 결정이 있을 때가 공시기준일임

본건의 경우 최초 건설계획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권한 있는 자의 결정이 있을 때가 공시기준일임

- 단, 최초 공사금액과 증액된 공사비를 합산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다시 결정(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동 결정일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를 공시하여야 함

21.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금액에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하여 공시여부를 판단하는지?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에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은 기준금액에서 제외함

22. 유형자산이 최초 취득시에는 기준금액 미만이었으나 자본적 지출<sup>1)</sup>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가치가 공시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시대상인지?

☞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가 공시사유발생일임

본건의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의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아님. 즉, 공시대상이 아님

주1) 유형자산에 관한 지출 중에서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또한 가용연수(可用年數)를 증가시키는 지출

23. 비유동자산 취득시 하나의 업체에 두 가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시판단 기준금액은?

☞ 비유동자산의 취득은 계약되는 건별(이사회결정건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하나의 계약을 두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한 경우에는 두개의 계약금액을 합하여 기준금액 산정

24. 비상장사인 A사가 자사 사옥을 계열사이면서 비상장사인 건설회사 B에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누가 무엇을 공시하여야 하는지?

☞ A사는 동 공사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양식에 공시를 하여야 하며, B사는 최초로 도래하는 기업 집단현황 연1회 공시시(매년 5.31.) A사와 발생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함

25. 사업부지 매입 등 비유동자산 취득을 위한 입찰의향서 제출 시 공시대상인지?

☞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비유동자산 취득을 하고자 이사회 의결 또는 대표자 결재(또는 내부결정)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 타법인 주식취득 · 처분 <작성양식 6~7>

26. 타법인 주식이라 함은 보유주식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각각의 회사별 주식을 말하는 것인지?

☞ 타법인 주식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 타 법인을 각각의 회사별로 파악하여 공시하는 것이 아님

즉 취득 또는 처분하기로 결정한 타법인 주식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

\*“타 법인”에는 국내의 계열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포함됨. 즉, 국내의 비계열회사와 해외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함

27. 주식 및 출자증권의 처분 및 취득시 출자증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예, 건설공제조합 등 조합출자금)?

- ☞ 출자증권이란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출자의 대가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말함  
따라서 건설공제조합 등은 회사가 아니므로 조합출자금은 출자증권에 포함되지 않음

28. 주식의 취득 및 지분 투자대상이 동일회사 기준인지 또는 총 투자금액 기준인지?

또한 1일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취득할 경우 취득 건별로 공시해야 하는지?

- ☞ 회사별 기준이 아닌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하루 동안에 다수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1일 거래 총 금액을 합산하여 공시기준의 해당여부를 판단

29. 타 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먼저 MOU를 작성 · 교환하였음.

향후 MOU를 토대로 실사를 하여 계약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공시기준은 언제로 하면 되는지?

- ☞ MOU와는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 · 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가 공시기준일 (공시사유발생일)임  
본건의 경우 MOU를 체결하기 전에 회사내에서 이미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동 의사결정일이 공시기준일임

30. 타법인 주식의 취득·처분 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 “취득·처분의 금액”은 실제로 거래될 취득·처분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중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함

31. 대규모기업집단 비상장회사인 당사(A)가 B사(비상장사, 계열회사 아님)의 주식을 취득하여 B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음. 공시를 해야 되는지?

- ☞ A사가 취득한 B사의 주식취득 금액이 A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법인 주식취득” 공시대상임

동 주식취득을 통해 A사가 B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면 B사는 계열편입 신고를 거쳐 A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어 상호 계열회사 관계가 형성될 것임

이런 경우 A사가 보유한 B사의 주식은 “계열회사 주식보유변동사항”의 수시공시의무가 발생됨을 유의, B사는 계열편입이후 공시의무가 발생됨

32. 해외 타법인 주식의 취득·처분이 달러로 거래될 경우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이사회 결의시점과 실제 거래시점의 차이 발생)

- ☞ 공시사유발생일(이사회 결의일 또는 대표이사 결정 등)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금액으로 공시여부 판단  
다만, 이사회 결의내용에 거래금액이 원화로 명시되어 있다면 동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33. A사(비상장)가 B사(100% 자회사) 설립 시 공시하여야 할 대상과 근거, 등기일로 부터 30일 내에 계열회사편입신고와 관련된 근거 법령, 그외 대규모집단현황공시 등 A사가 B사 설립과 관련하여 공정위에 신고 및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 ○ A사

- B사 출자금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공시(시행령 제17조의10제3항2호) 대상이 됨
- B사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B사는 계열편입신고(시행령 제20조 제3항)를 거쳐 A사와 계열관계가 형성될 것이므로 B사의 계열편입 후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은 향후 추가취득이나 처분시 계열사주식보유변동(시행령 제17조의10제2항3호) 공시대상이 됨

○ B사의 경우

- 계열편입신고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계열편입한 날(편입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아래와 같은 의무가 발생(위반시 제재조치)

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 제1항)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 및 소유금지(법 제9조제3항)

다.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법 제10조의2)

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법 제11조)

마.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 (구)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제2009-2호)은 기업  
집단현황등에 관한 공시규정(제2009-13호, 09.7.8) 제정시 폐지됨

\* (구)규정에 따른 정기공시사항은 기업집단현황공시에 포함되었으며  
수시공시사항은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에 규정됨

사.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법 제11조의4)

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법 제14조 제5항)

자.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의 신고의무 발생(법 제13조)

차.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 법 제10조의2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위반을 해소하여야 함

카. 법 제13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전산자료제출포함)

## 증 여 / 수 증

<작성양식 8~9>

34. 시가가 확실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시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35. A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인 B가 A사의 주식 100%를 계열회사인 C사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때 각각의 회사에서 공시하여 할 항목은 무엇인지? (A사와 C사 모두 비상장회사)

- ☞ A사는 최대주주가 B에서 C사로 변동되었으므로 최대주주 변동사항 공시를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 ☞ C사는 계열회사인 A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계열회사의 보유주식 변동사항을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증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함
- \* A사 대주주인 개인이 증여를 하였으므로 A사는 증여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의무 없음

### 담보제공, 채무보증

<작성양식 10~14>

36. A건설회사는 B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함. B사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 방식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동 대출금에 대하여 A사가 지급보증한 경우 공시대상인지?

- ☞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와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해 행한 지급보증은 건설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행보증”의 성격임
- 따라서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 등의 이행보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시대상이 아님

\* 상장회사 공시규정[「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3)]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은 공시대상(다만, 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

\* 단,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발주처가 받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것은 입찰.계약.하자 등의 이행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37.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경우 국내금융기관을 통한 채무보증만을 말하는 것인지?

☞ 국내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한 채무보증도 공시대상임

38. 공시대상회사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지급보증에 대한 처리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공시의무가 있으므로 지정되기 전에 발행한 사항은 공시대상이 아님

다만, 추후 공시사유 발생시 본건의 채무보증 잔액이 유지되고 있을 경우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에 기재하여야 함

39.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서 타인의 범위는?

-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서 “타인”은 모든 법인격을 가진 주체를 말함 ⇒ 해외법인이나 해외현지법인 등도 해당, 직원에게 보증하는 경우도 해당

40. 자금거래를 전자어음으로 하기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시 공시대상인지?

- ☞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공시대상 아님

41. 해외법인에 제공한 담보제공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면, 공시해야 하는가?

- ☞ 담보제공 연장관련 이사회 결정일 혹은 이사회 결정이나 내부 결정없이 연장 승인절차만 거쳤다면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증자·감자, 사채발행 등 <작성양식 15~20>

42. 우선주의 증자 또는 감자를 실시할 경우에도 공시대상인지?

- ☞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회사의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것이므로 주식의 종류와 구분 없이 공시대상이며, 아울러 증자 또는 감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공시대상임.

또한,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이상 변동시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공시, 계열사주식지분이 1%이상 변동시  
계열사 주식보유변동공시 대상임

#### 43. 사모사채 발행시 공시 여부는?

☞ 사모사채 또는 공모사채의 구분없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하여는 공시대상임

#### 44.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신주발행가격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공시양식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공시하고  
가장 중요한 신주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추가로 공시하면 됨

\*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 45. 공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유상증자 공시대상인가?

☞ 유상증자 결정 공시대상으로 정부출자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공시  
(공시양식의 참고란에 정부출자금임을 명시)

46. 대규모소속의 건설회사(A)가 아파트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B)의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수 할 경우

- \* 양도내역 : B사 명의의 토지 및 아파트 개발사업 권리 및 의무 일체(인력 제외)
- \* 양도부분은 B사의 사업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B사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일 뿐 향후 B사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님

①비상장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관련된 공시대상인지의 여부?

②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닌 건설용지의 “재고자산”으로 회계 분류시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유형자산 취득 공시대상여부에 포함되는 것인지?

☞ ①의 경우는 아파트 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사업권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및 양수와 관련된 공시대상이 아님

☞ ②의 경우는 A사가 B사로부터 매입한 건설용지(토지)가 기업회계 기준상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면 공시규정에서 정한 유형자산이 아니므로 공시대상이 아님

## 합병 · 분할

<작성양식 25~28>

47.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계약체결일과 주주총회 승인일 중 공시 기준일은?

- ☞ 합병에 대한 공시기준일(공시사유발생일)은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를 말함  
따라서 합병계약체결일 또는 주주총회 승인일은 공시기준일이 아님

48. 2008.1.4. 회사를 분할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 그러나 분할결정만 했을 뿐 구체적인 분할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다시 이사회 결의를 하여 최종확정할 계획임

따라서 2008.1.4. 이사회결의사항을 공시하려고 하니 공시양식에 기재할 내용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공시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하면 됨  
(\*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

49. A사(비상장사)의 자회사인 B사(비상장사)가 회사를 분할하여 B1사(존속법인)와 B2사(신설법인)로 나뉘고, B2사는 회사분할 한달이내에 타사에 매각할 예정일 때 공시할 사항은?

☞ ○ A사

- 회사분할시: 계열사 주식보유변동(지분율 1%이상 변동시)

- B2 매각시: 계열편입전 매각시 타법인주식처분공시  
계열편입후 매각시 계열사주식보유변동현황공시
- B사(B1사)
  - 회사분할시: 회사분할 결정공시,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공시  
(지분을 1%이상 변동시)
- B2사
  - 회사분할시: 공시의무없음
  - 계열편입신청필요
  - 매각될 때: 계열편입후라면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공시  
계열제외후라면 매각시 공시의무없음

50. A사가 B사(100% 출자)를 합병하면서, 이사회 결의사항은 공시하였는데 별도로 계열사 주식보유변동을 공시하여야 하는지?

☞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결정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실제로 합병을 한 후, 주식보유비율(100% → 0%)이 변동된 시점에서 별도로 계열사 주식보유변동 공시를 해야 함.

회사정리절차 관련

<작성양식 29~35>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등에 대한 공시시기는 언제인지? 즉, “결정이 있을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다른 공시사항과는 달리 본 공시사항에서 “결정이 있을 때”는 법원에서 회사정리 절차 개시·종결 등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52. 해산에 대한 이사회 결의 후, 공시하면 더 이상 공시 의무가 없는지?

- ☞ 계열제외전까지는 공시 의무가 있으나, 청산중(청산인 선임 혹은 청산 등기한 때로부터)인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공시 의무가 제외됨

53. 상장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하기 위해 미수거래를 하게 되었고 결제일에 미수금을 입금한 경우 타법인 주식 취득결정 공시기준일은?

- ☞ 타법인 주식취득의 경우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공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본건과 같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수시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별도의 취득 결정과정(이사회 보고, 대표이사의 결재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완납한 시점(즉 결제일)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면 될 것임

54. 공시규정의 용어 중 “변동이 있을 때”와 “결정이 있을 때”의 차이점은?

- ☞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날로 이해하면 됨

즉, 주식양수의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 신주 유상취득의 경우 주금납입기일 다음날, 지분양수의 경우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임원 변경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날을 말함

☞ 결정이 있을 때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를 말함

55. 자회사의 주요공시내용을 지주회사가 공시한 경우 자회사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가?

☞ 자회사가 직접 공시하여야 함

##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매뉴얼

- 발행연월일 2009년 7월 13일 발행<초판>  
2010년 5월 일 발행<개정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발 행 처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전 화 : (02)2023-4273~81  
F A X : (02)2023-4282
- 인 쇄 처 문중인쇄(주) (02)503-7764~5